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일제강점기 소년형무소의 설립과 운영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Juvenile Pris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강혜원

# 일제강점기 소년형무소의 설립과 운영

지도교수 허영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한국문화학과  
강혜원

강혜원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권호재 (인)  
심사위원 원영미 (인)  
심사위원 허영란 (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년 8월

## 국 문 요 약

# 일제강점기 소년형무소의 설립과 운영

강혜원

소년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특수형무소로, 소년만을 수용한 교정기관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소년은 민족의 위기를 구원할 존재이자 제2국민, 소국민으로 호명되어 민족과 제국에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속에서도 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불량소년의 존재는 사회적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법으로 소년형무소를 설립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총 3곳의 소년형무소가 설립되었다. 개성소년형무소를 시작으로 김천소년형무소, 인천소년형무소가 차례로 설치되었는데, 조선총독부는 소년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립했다. 각각의 형무소에서는 소년들의 연령, 형기, 학력 등에 따라 수용 기준이 달랐다. 개성소년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는 연령 18세 미만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의 조선인 남자 수형자를 수용하였으며, 김천소년형무소는 형기 1년 이상의 20세 미만의 남자 수형자를 수용했다. 다른 두 소년형무소와 달리 인천소년형무소는 초범자로 입소 당시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3년 수업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수용했다.

소년 범죄는 절도죄, 사기 및 횡령, 상해 등 다양하게 발생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빈곤에 의한 절도죄였다. 식민지 시기 조선은 빈곤이 만연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절도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년 범죄의 원인으로서는 빈곤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했는데 당시에는 소년 범죄 원인을 범죄자 자신의 고유한 원인인 개인적 원인과 범죄자의 환경에 존재하는 원인인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일제는 대부분 개인적 원인을 강조하여 소년들의 개인적 자질을 문제 삼아 사회적 책임을 미루고자 했다. 하지만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소년 범죄 원인에 관해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년형무소에서는 1923년 2월 제정된 「소년수형자처우규정」 따라, 수형자들의 품행과 작업 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점수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년들은 각 등급마다 배급품, 작업 상여금 등의 차별을 받았다. 교육은 「소년수형자교육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수형자들이 석방 후에도 사회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여, 감정을 순화시키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37년에는 「조선행형교육규정」이 제정되면서 형무소 내 교육 내용이 재편되었는데, 특히 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 일본어 사용이 강조되었다. 형무소에서는 교육과 함께 작업도 이루어졌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석방 후에 수형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형무소 내의 작업은 대부분 관사업(官事業)사업을 위주로 하여 생활 직업을 수행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년형무소는 본래의 기능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소년들을 전시에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선소년령」을 제정하여, 범죄소년과 우범소년들을 인력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선소년령」의 보호처분으로 보호기관, 감화원, 교정원 등에 수용된 소년들 중 일부는 취업을 받기

로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가석방이나 부정기형을 통해 형기를 조절하여 보국대로 차출되어 인력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주요어 : 소년형무소, 소년 범죄, 소년 범죄자 처우, 소년수형자처우규정, 소년수형자 교육규정, 조선소년령, 보국대

# 《목 차》

1. 머리말 .....	1
2. 소년 범죄의 양상과 소년형무소의 설립 .....	3
1) 소년 범죄의 유형과 원인 .....	3
2) 소년형무소의 설립 .....	10
3. 소년형무소의 운영과 「조선소년령」의 제정 .....	17
1) 소년형무소의 운영 실태 .....	17
2) 「조선소년령」 제정과 전시체제기 소년형무소의 운영 .....	23
4. 맺음말 .....	28
《참고문헌》 .....	31
《부록》 .....	34
ABSTRACT .....	47

## 《표 목차》

〈표-1〉	개성소년형무소 입소자의 죄명	4
〈표-2〉	개성소년형무소 수형자의 보호자 현황	8
〈표-3〉	전국 감옥의 명칭과 위치	10
〈표-4〉	일제강점기 소년수형자의 수	16
〈표-5〉	개성소년형무소 입소 시 교육 정도	18
〈표-6〉	1942년 「조선소년령」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조항	24

## 《부록 목차》

〈부록-1〉	「감옥관제」(1907.12.18.)	34
〈부록-2〉	「특수수형자집금에 관한 건」(1922.09.21.)	34
〈부록-3〉	「조선총독부 감옥 및 분감 명칭, 위치」(1923.05.05.)	35
〈부록-4〉	「소년수형자처우규정」(1923.02.)	36
〈부록-5〉	「소년수형자처우규정세칙」(1923.07.)	38
〈부록-6〉	「소년수형자교육규정」(1923.07.)	41
〈부록-7〉	「특수수형자집금에 관한 건」(1924.01.30.)	41
〈부록-8〉	「특수수형자집금에 관한 건」(1924.12.15.)	42
〈부록-9〉	「형무소수용구분에 관한 건」附表(1937.03.24.)	43
〈부록-10〉	「조선행형교육규정」(1937.05.24.)	45

## 1. 머리말

한말 이후로부터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소년회의 조직과 소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소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소년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 여기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으며, 조선총독부는 소년들을 근대화할 이룰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여 제2국민, 소국민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소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다. 일부 소년들은 교육을 받지 않고 길거리에서 부랑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사회적 근심거리로 여겨졌다. 소년들의 불량화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1910년대에는 거리에서 부랑하거나 절도를 저지른 소년들을 훈계하거나 추방하는 정도로 처벌했다. 그러나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감옥에 수용되기도 했다. 소년형무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성인과 소년이 같은 감옥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미성숙한 소년들은 성인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감옥은 범죄 양성소로 비판받기도 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22년 관통첩 제86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수형자들은 특수수형자로 분류하고 감옥이나 분감에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수감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1923년 5월, 소년들을 수용하던 개성분감은 부령 제72호에 따라 개성소년형무소로 승격되어 소년형무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24년에는 소년들을 수용하던 김천지도 김천소년형무소로 개칭되어 소년형무소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1936년에는 인천소년형무소가 설립되어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총 3개의 소년형무소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소년형무소는 해방 이후에 소년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소년형무소에 관한 연구로는 소년 범죄 관련 정책 연구와 불량소년 담론, 교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소년형무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소년 범죄 관련 정책 연구로 노수빈은 소년사법보호정책인 감화사업을 중심으로, 소년 범죄의 유형과 소년 범죄에 대한 담론에 대해 연구했다.<sup>1)</sup> 일제강점기에는 소년 범죄 및 불량화가 사회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소년문제는 정부와 민간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 공공의 문제로 여겨져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소년형무소와 감화사업이 소년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감화사업은 사회사업 정책으로 소년형무소와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신정윤은 소년사법보호정책인 「조선소년령」을 일본의 소년법과 비교했다.<sup>2)</sup> 「조선소년령」은 감화사업이 실시된 1923년에서 약 20년이 흐른 1942년에 제정된 소년법으로 소년을 보호하기 보다는 전쟁 상황에서 소년을 통제하고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불순한 성격을 가진 법령이라고 설명했다. 위의 두 연구는 소년 범죄 문제와 관련된 정책 연구로, 각각 감화사업과 「조선소년령」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소년형무소가 소년 범죄 문제 해결책으로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강경래는 소년형무소 설립 이전 소년 범죄자의 교육적 처우의 기원을 개관하고, 소년형무소의 운

1) 노수빈, 「식민지기 소년 범죄와 감화사업의 전개 - 조선총독부의 감화사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 신정윤, 「전시체제기 소년사법 보호정책의 성격과 식민지 특성 : '조선소년령'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 75, 2020.

영 내용을 설명했다.<sup>3)</sup> 또한 일본이 소년수형자에게 행한 교정교육과 비교하면서 조선에서도 교육적 처우가 실시되었지만 식민지 감옥제도로 인해 소년보호 정책의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비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소년형무소의 역할을 일부 분석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과 불량소년을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현철은 소년불량화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년형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sup>4)</sup> 오랫동안 형무소 내의 교화 작업은 선진된 만큼 사회적인 순화기능을 해내지 못했으며 적어도 소년형무소가 소년 범죄와 비행을 줄이는데 공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현숙은 조선총독부가 소년 불량화의 원인으로 언급한 가정 결함, 선천적 불량성 등을 분석하고 이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설명하고 있다.<sup>5)</sup> 또한, 소현숙은 일제가 소년 불량화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기 위해 소년 불량화의 원인은 개인적 소질이라는 담론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유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경숙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최윤호가 불량소년소녀에 관하여 서술한 글을 분석했다.<sup>6)</sup> 이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불량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김현철과 소현숙의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소년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동시에, 불량소년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과정, 반강제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감옥·교정기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부분 성인 대상의 일반형무소가 중심이었지만, 특수형무소인 소년형무소에 대해서도 부분적이나마 함께 서술하고 있다. 천정환은 인천감옥을 시작으로 인천소년형무소, 인천소년교도소, 인천구치소 순으로 이어지는 인천교정기관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했다.<sup>7)</sup> 그 중 인천소년형무소는 일제강점기 후반기에 설립되어 일본의 전쟁에 필요한 군수작업의 일선기지였으며 해방 후에는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인해 행형의 혼란을 겪은 장소였다고 설명한다. 이종민은 조선시대의 전통적 감옥의 상황을 정리하고, 일본이 도입한 근대적 행형인 자유형과 감옥시설에 대해 분석했다.<sup>8)</sup> 박경목은 대한제국기 감옥서 설치와 감옥 제도의 변화에 대해 규명했다.<sup>9)</sup>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감옥·교정기관에 대한 연구는 감옥제도의 변화가 근대화로 포장되었지만 식민지 지배 장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는 소년 범죄 문제에 주목하면서도 소년형무소라는 중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정리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의 식민 통치 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년’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시기임을 고려할 때, 교화 기관으로서의 소년형무소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소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소년형무소의 설립 과정과 소년들의 범죄 유형을 조사하며, 소년들의 형무 생활, 교육, 작업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소년형무소의 목적과 소년형무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소년형무소의 성

3) 강경래, 「식민지 조선의 소년 범죄자 처우에 관한 고찰」, 『少年保護研究』 29, 2016.

4) 김현철,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소년불량화 담론의 형성」, 『교육사회학연구』 12, 2002.

5) 소현숙, 「식민지시기 '불량소년' 담론의 형성」, 『사회와 역사』 107, 2015.

6) 이경숙, 「최윤호의 생애와 교육론-불량소년소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2022.

7) 천정환, 「인천교정기관의 역사와 평가」, 『인천학연구』 31, 2019.

8)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22, 1999.

9) 박경목,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경성감옥 설치와 본감·분감제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46, 2008.

격과 시대적 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년형무소 설립 이전 감옥제도의 변화와 함께 일제강점기 설립된 개성, 김천, 인천소년형무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개성소년형무소의 『소년수형자의 통계(少年受刑子の統計)』와 김천소년형무소 『청년수형자통계보고(靑年受刑者統計報告)』에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각 소년형무소 수형자들의 인원, 범죄 이유, 죄명 등을 파악하고, 일제강점기 소년형무소에 수용된 수형자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인천소년형무소의 설립과 수용 기준은 『인천소년교도소사(仁川少年矯導所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에 게재된 감옥관제의 개편 내용, 수형자의 처우규정 및 교육규정을 분석하여 소년형무소 운영 내용을 파악한다. 이후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형과에서 발행한 『조선의 행형제도(朝鮮の行刑制度)』를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에 설치된 감옥의 현황과 형무소에서 실시된 작업, 교육 등의 내용을 파악한다. 또한, 치형협회가 발행한 잡지 『치형(治刑)』을 통해 일제강점기 소년 범죄 원인과 소년 행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소년형무소 방문기를 통해 당시 소년형무소의 실상을 유추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년 범죄와 소년형무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자료와 잡지를 활용했다.

본문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장에서는 소년 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검토하여 소년형무소에 수용되는 소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소년 범죄 중 빈곤으로 인한 절도죄가 가장 높았으며, 당시 소년들은 생계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빈곤뿐만 아니라 소년 범죄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본문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소년형무소가 왜 설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년형무소 설립 이전의 감옥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1907년 일본식 행형의 도입을 시작으로 보고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감옥관제의 개편 과정과 소년형무소의 설립을 파악하고자 한다. 열악한 감옥시설의 실태와 여러 문제점들을 설명하면서 소년형무소가 설립된 목적을 파악하고, 이후 설립된 소년형무소의 내용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소년형무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소년형무소가 설립된 후, 운영을 위해 제정된 처우 규정과 교육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년형무소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한다. 소년들을 전쟁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조선소년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 「조선소년령」이 적용된 소년들이 전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소년 범죄의 양상과 소년형무소의 설립

### 1) 소년 범죄의 유형과 원인

1910년대 초 강제병합으로 인해, 조선 사회는 급격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근대문명의 도입과 농촌의 붕괴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소년 범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불량소년은 소년 범죄자부터 부랑아, 고아, 장애아, 빈민아동, 불량학생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sup>10)</sup> 이들이 절도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10) 노수빈, 「식민지기 소년 범죄와 감화사업의 전개 - 조선총독부의 감화사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3쪽.

불량행위를 하게 되면서, 불량소년들은 사회적 치안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1914년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형자 14,327명 중 20세 미만의 수형자의 수는 1,229명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했다.<sup>11)</sup> 즉, 소년 범죄는 전체 범죄의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소년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소년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거리에서 불량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14세 미만의 아동 또는 범죄의 질이 낮은 아동에 대해서는 훈계 및 지역에서 추방하는 정도로 처벌했다. 그러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하기에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지는 경우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검사국으로 이송된 소년들은 성인과 동일한 수사과정을 거쳐 재판을 받았다.<sup>12)</sup>

당시 소년들의 범죄 지역은 도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찾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도시빈민이 생겨났다. 소년들의 범죄는 도시의 치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 불량하면서 씻지도 못하는 소년들은 사람들에게 비위생적으로 보였고, 절도와 구걸을 하는 소년들의 모습은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당시에는 조선총독부가 이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많았으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구걸하고 절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절도 외에도 소년들의 다른 범죄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개성소년형무소의 『소년수형자의 통계』에서 형무소에 수용된 소년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성소년형무소 입소자의 죄명

	1926	1928	1931	1932	1933	1938	1939	1940	1941
방화	3	6	12	5	4	5	3	2	5
왕래방해		1	10	12	10	1	4	3	
문서위조	1				3				
통대위조 (通貨偽造)					2			1	
유가증권 위조		3		1		1			
외설 간음 중혼	2	1	2	2	2	3	1	2	1
살인	2	2	2	1	4		1		1
상해	1	3	1	3	8	3	3	4	1
절도	347	459	389	611	550	603	576	601	723
강도	10	15	7	10	20	6	5	2	5
사기 및 공갈	6	11	6	11	8	7	7	14	9
횡령	1	5	3	3	4		2	5	4
장물에 관한 죄	2	2	3	1	5	3	10	16	6
우편법 위반									

1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14, 631쪽.

12) 신정윤, 「일제하 미성년자의 범주문제와 조선총독부의 대책」, 『역사와 세계』 55, 2019, 186쪽.

치안유지법위반		1	2	1	4				
폭력행위처분법			5						
보안법위반				2					
삼림령위반								1	
상습특수절도								1	5
도박								1	
아편취체령								1	
계	375	509	442	663	624	632	612	654	760

출전: 開城少年刑務所, 「少年受刑者ノ統計」, 『開城少年刑務所』, 1926년; 1928년; 1931년; 1932년; 1933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쪽.

위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개성소년형무소에 수감된 소년 범죄자의 죄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절도죄였다. 더욱이, 이 비중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sup>13)</sup> 또한, 평양지방법원에서 1933년 1년간 취급한 형사사건 중 미성년자의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총 115명으로 20세 미만 18세까지 66명, 18세 미만 16세까지 43명, 16세 미만이 6명이다. 이들 중 개성, 김천 소년형무소로 수용된 18세 미만의 57명을 대상으로, 남녀 범죄별로 나누면, 남성은 절도 34명, 상해 7명, 치안유지법위반 2명, 삼림취체령위반 2명, 강도상인 1명, 횡령 1명, 왕래방해 1명, 약품취체규칙위반 1명, 장물은닉 1명, 금 밀수 1명, 철도영업법위반 1명이고, 여성은 방화 1명, 살인 4명이다.<sup>14)</sup> 이 57명의 소년 범죄자 중 52명이 남성, 4명이 여성이었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범죄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들 중 34명이 절도죄로, 절도죄가 다른 범죄보다 특히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을 살펴보면, 절도죄 외에도 사기 및 공갈죄, 상해, 장물에 관한 죄, 횡령죄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강도와 살인, 외설, 간음, 중혼 등의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절도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빈곤으로 인한 것이었다. 생계수단이 없는 소년들이 절도를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절도죄 외에도 다른 범죄들의 발생 원인도 빈곤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sup>15)</sup> 이러한 빈곤 문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널리 퍼진 문제였다.

하지만 당시에 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빈곤 외에도 가정결함, 방탕, 허영, 오락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했다.<sup>16)</sup> 이러한 원인들은 개인적 원인(또는 내부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또는 외부적 원인)으로 구분되었다. 개인적 원인은 범죄자 자신의 고유한 원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회적 원인은 범죄자의 환경에 존재하는 범죄의 원인을 가리켰다. 다시 말해, 이는 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한 소질과 환경에 대한 것이다.<sup>17)</sup> 1925년 『조선일보(朝鮮日報)』에 연재된 「봄철과 아동범죄 불량소년소녀단의 생긴 원인」에서는 불량소년소녀단이 발생한 원

13) 「少年窃盜頻頻」, 『동아일보』, 1921.03.16.; 「平壤署管内에 少年犯罪激增 대부분이절도」, 『조선중앙일보』, 1933.12.19.; 「淸津의上半期犯罪 窃盜犯이六割强」, 『동아일보』, 1938.08.21.; 「犯罪二千餘件中 少年窃盜가首位」, 『동아일보』, 1939.02.24.; 「犯罪件數激增 首位依然少年窃盜 群山署管内調査」, 『동아일보』, 1939.06.24.

14) 「未成年者의犯罪 窃盜傷害가首位」, 『조선일보』, 1934.05.24.

1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0年, 316-321쪽.

16) 開城少年刑務所, 「開城少年刑務所要覽」, 『開城少年刑務所』, 1934, 24쪽.

17) 治刑協會, 「治刑: 犯罪上より觀たる朝鮮の社會相(一)」, 『治刑協會』 15, 1936, 39쪽.

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범죄인이 될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야만시대, 범죄시대가 있다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선량한 교육을 시켜 어려서부터 도덕적 관념을 풍부히 넣어주어야 할 것이 오시다. 환경이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시 성질이 악화하였던 아이도 환경이 변하고 상당한 교육을 하는데 따라서 다시 좋은 아이가 되는 일도 우리가 많이 보는 사실이오시다. 그리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동의 범죄성이 유전적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중략) 범죄성의 병적인 아이들일지라도 지도자의 열심으로 인하여 개과천선하는 실례도 적지 않습니다.<sup>18)</sup>

<2>

어린아이는 신체의 결함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적지 않은데 (중략) 눈이 좋지 못하거나 목이나 코에 병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잘 먹지 못하여 몸이 허하기 때문에 당창(唐瘡, 성병의 하나)이나 신경계통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나 그 중에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은 당창과 잘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략) 또 정신의 박약한 것이 범죄의 큰 동기가 됩니다. 정신이 박약한 것이 상습범죄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은 최근의 연구로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정신병자가 많을 뿐 아니라 신문의 사회면의 보도되는 것을 보아도 거기에는 정신박약자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슨 일을 판단할 능력 없이 즉, 전후 생각 없이 해버리는 것이오시다.

(중략)

소년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몸에 해를 끼치게 하고 공부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소년 노동자 중에는 병이 많이 생깁니다. (중략) 소년 소녀 중에는 길바닥에 떨어진 쇠붙이를 주워서 그것을 팔아 잔돈푼을 얻어 쓸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내버린 것만 줍던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가르쳐 정말 죄를 흠지게 하여 그것을 몇 푼에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차차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타락시켜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sup>19)</sup>

<3>

어린아이의 범죄는 또 오락장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더욱 봄밤에 유혹이 많은데는 활동사진관, 흥행물, 공원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소년이나 청년을 타락시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습니다. (중략) 그리고 또 책이 소년과 청년에게 큰 감화를 주는 것도 두말 할 것 없습니다. 자기의 주견이 굳게 서지 못한 때에는 무슨 책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곧 그리로 쏠리어 버립니다. (중략)

18) 「봄철과아동범죄 불량소년소녀단의생기원인(二)」, 『조선일보』, 1925.04.12.

19) 「봄철과아동범죄 불량소년소녀단의생기원인(三)」, 『조선일보』, 1925.04.16.

『찌고마』 사진 같은 것을 보면 곧 자기도 큰 도적이 되어 보고 싶어 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중략)

어린아이는 때를 지어 다니다가 무서운 범죄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량소년소녀의 무슨 단이니 무슨 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운 단체인줄 모르고 들어가 보았다가 거기서 범죄행위 같은 못된 행위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나오려 하여도 나올 수 없이 타락의 깊은 구렁이에 빠지게 됩니다.<sup>20)</sup>

<4>

청년이나 소년은 한가로이 있으면 못된데 빠지기 쉽습니다. (중략) 입학난이 심한 때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에 올라와서 고등보통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시골로 내려가지 못하고 경성에 입학준비를 한다고 답지 못한 강습소 같은데나 다니면서 좋지 못한 동료와 사귀다가 타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남녀 간에 청년기에는 어쨌든지 병이 나기 쉬우니 이런 병을 알고 회복하기까지 한가로이 노는 사이에 타락하는 일이 많습니다.<sup>21)</sup>

위 기사에서는 소년의 범죄 원인으로 신체의 결함, 정신박약, 오락, 교우관계, 한가로운 상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범죄자 자신의 고유한 원인인 개인적 원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선량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불량소년소녀들이 범죄인이 될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소년의 범죄성이 유전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년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량한 교육을 시켜 도덕적 관념을 키워야 한다고 하여 교육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자는 소년의 범죄 원인 중 오락을 언급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책이 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년들은 소설 속 주인공을 자신이라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설 속 주인공이 저지른 범죄행위까지 모방하면서 실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 기사에서는 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을 거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적 원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일제는 지속적으로 불량소년의 자질 문제를 강조하면서 소년 범죄의 원인을 개인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sup>22)</sup>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사회적 원인을 주장하는 논의도 계속 나오면서, 소년 범죄 원인에 대한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다.

독립 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최윤호는 1933년 『동아일보(東亞日報)』에 연재한 「불량소년소녀들을 어떻게 취급할가」라는 글을 통해 범죄의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고르지 못한 세상’은 돈도 없고 지위도 낮으며, 기회조차 오지 않는 어려운 삶 속에서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현대 문명의 화려함이 마음을 끌기 쉽다. 이런 현대 문명의 화려함을 쫓는 소년들은 생각이 깊지 않고 의지도 굳지 않아서,

20) 「봄철과아동범죄 불량소년소녀단의생기원인(四)」, 『조선일보』, 1925.04.17.

21) 「봄철과아동범죄 불량소년소녀단의생기원인(五)」, 『조선일보』, 1925.04.18.

22) 소현숙, 「식민지시기 ‘불량소년’ 담론의 형성」, 『사회와 역사』 107, 2015, 58쪽.

분수에 넘치는 일과 행동을 하다가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가정’으로 물리적으로 집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집이 없어서 셋집에서 생활하면서 집에 대한 애착심이 적어져서 돈을 아끼는 마음이 적고, 결혼도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실업’으로 도시에서는 경제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실직하면 다시 취직하기가 어려워져 별이가 없는 상황이 되면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옳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된다. 네 번째는 ‘유전’으로 불량소년을 조사해보면 정신이상자와 신체불구자가 많은데 이것은 후천적 영향도 있지만 선천적 유전인 경우가 더 많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심신 불구자는 생존을 같이 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불량생활 불량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유전을 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언급하면서 최윤희의 주장은 일체의 주장처럼 선천적 유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다. 그러나 최윤희는 불량소년 중에 정신이상자와 신체불구자가 많다고 언급했을 뿐, 불량소년이 곧 심신불구자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sup>23)</sup> 소년 범죄 원인을 설명한 후, 최윤희는 불량소년을 대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소년들의 불량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집과 직업 등의 사회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들은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소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년 범죄의 원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연재기사 「봄철과 아동범죄 불량소년소녀단의 생긴 원인」에서는 소년들이 범죄 소질을 타고 태어나고 정신적으로 약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반면에 『동아일보』의 연재기사인 「불량소년소녀들을 어떻게 취급할가」에서는 최윤희가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소년들이 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불량행위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개성소년형무소 수형자의 보호자 현황

연도 생육	1926	1928	1931	1932	1933	1938	1939	1940	1941
친부모	225	358	313	470	441	419	361	386	453
양부모	1	5		4	1	2	3	1	1
계부실모	11	6	12		17	18	21	27	23
실부계모	9	9	13	22	16	16	18	26	20
친부	53	46	53	53	60	65	66	72	69
친모	48	55	33	66	59	73	80	83	91
조부모	6	5	6	10	8	6	15	11	15
친족	15	19	13	17	15	22	28	35	52
계	368	503	443	642	617	621	592	641	724

출전: 開城少年刑務所, 「少年受刑者ノ統計」, 『開城少年刑務所』, 1926年; 1928年; 1931年; 1932年; 1933年; 1938年; 1939年; 1940年; 1941年.

23) 이경숙, 「최윤희의 생애와 교육론-불량소년소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2022, 297쪽.

가정결함도 중요한 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언급된다.<sup>24)</sup> 일반적으로 가정결함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부모가 없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죄 소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2를 통해 수용된 소년들의 가정 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가정이 불우하거나 가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집안에서 소년을 너무 방종하게 키우거나, 상당한 자산가 집안에서 하등 부족함 없이 자란 소년들은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훈계나 회유를 하여도 불량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sup>25)</sup> 방종하거나 금전적 여유가 있는 소년들의 경우에는 활동사진이나 기타 유흥장소에 출몰하여 영화나 연극 등의 영향을 받아 호기심에 모방하게 되고, 기타 악우들의 유인으로 불량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본래 아동에게 좋은 영향과 감화를 주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소년들은 보고 듣는 것이 불량한 것이니 안 좋은 영향을 받아 타락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위의 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와 가정의 환경이 그들을 불량소년으로 만들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sup>26)</sup>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에 유전학, 우생학 등 의학적 지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은 정신병이 있으며, 정신병 발발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유전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sup>27)</sup> 초기에는 이들을 내버려 두었지만, 점차 우생관념이 보급되면서 이들을 통한 교화와 위생관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이러한 지식의 확산으로, 범죄 소년의 불량성은 개인의 선천적 자질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빈곤이나 소녀의 경우에는 조혼으로 인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범죄<sup>28)</sup>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개인적 원인으로만 소년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년 범죄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소년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천적으로 불량한 소년들도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으며, 사회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들도 보호와 교육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감옥에 수용되었지만, 감옥은 오히려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감옥

24) 「범죄소년의 최대다수는 양친이 俱存한 소년인것을 보면 가정의 주의와 지도가 부족한 것을 알수 있다하는」, 『매일신보』, 1923.10.07.; 「불량소년소녀는 어떤가정에 생기나」, 『조선일보』, 1937.06.02.; 「자식을 버리는 원인은 혼히는 가정불화 (上(상))」, 『동아일보』, 1938.01.21.; 「불량아동과 엄마의훈육 따듯지못한가정에서 연소범죄자가 난다」, 『동아일보』, 1939.03.23.; 「家庭環境이 最大影響 原因防止에 注力緊急」, 『동아일보』, 1939.05.07.; 「浮浪性醜成動機는 家庭의 指導의 缺如」, 『동아일보』, 1939.05.08.; 「家庭의 惠澤과 保護없는 少年少女의 犯罪激增」, 『동아일보』, 1940.05.24.

25) 玉名友彦, 「少年保護に就て」, 『朝鮮司法保護協會』 2, 1941, 13쪽.

26) 「社說」, 『매일신보』, 1930.9.27.

27) 「양심있는 부모되어 가정을 건전하게 하자-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린다 少年犯罪對策 ③-少年審判所所長 上野義清氏 談」, 『매일신보』, 1942.09.15.

28) 「早婚餘弊의 活證據」, 『동아일보』, 1921, 12. 27.; 「殺人罪는 女子가 最多」, 『조선일보』, 1923, 02. 04.; 「虐待가 難堪해서 媼母毒殺하란 少婦」, 『조선일보』, 1926, 04. 16.; 「十七歲少婦 媼家에 四次放火」, 『동아일보』, 1928, 07. 24.; 「離婚하고 십허 十七少婦放火」, 『조선일보』, 1929, 05. 14.; 「十九歲少婦가 男便을 毒殺未遂」, 『조선일보』, 1930, 01. 18.; 「早婚의 弊害」, 『동아일보』, 1936, 02. 08.; 「朝鮮女子의 犯罪와 早婚」, 『동아일보』, 1937, 07. 10.

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소년형무소를 설립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다.

## 2) 소년형무소의 설립

대한제국 말기는 일본의 개입이 심화되는 시기로 조선의 모든 것들을 일본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중 행형도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 행형으로 대체되었으며, 감옥제도도 대폭 개편되었다. 이에 더해서 1907년 당시, 정미조약으로 인해 한국군이 해산되면서, 해산 군인들 중 일부가 무기와 탄환을 탈취하여 의병에 합류하면서 항일세력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의병을 잡아들였으며 감옥의 수감 인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감옥시설이 필요했다.

일본은 조선의 감옥제도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형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일본식 감옥제도를 도입했다. 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52호 「감옥관제(監獄官制)」<sup>29)</sup>를 제정하여 1908년 2월에 시행했다. 감옥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에 경무청에서 담당하던 감옥사무를 법부로 이관시키고 법부대신이 감옥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사법권에서 감옥사무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들을 감옥 인력으로 충원함으로써 사법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후 일본은 기존의 감영이나 관아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감옥으로 재사용하여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1908년 4월 11일 법부령 제2호 「감옥위치·명칭(監獄位置·名稱)」<sup>30)</sup>에 따라 전국 8개 감옥의 명칭과 위치가 공포되었다. 8개의 감옥들은 1908년 7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지만, 전국에 8개 감옥이 개소하여도 항일세력의 격렬한 저항운동으로 인해 의병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고 일본은 이들을 체포하여 수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개소한 8개 감옥은 포화상태가 되었다.

표 3 전국 감옥의 명칭과 위치

명칭	위치
경성감옥	한성부
평양감옥	평안남도 평양
대구감옥	경상북도 대구
공주감옥	충청남도 공주
해주감옥	황해도 해주
광주감옥	전라남도 광주
진주감옥	경상남도 진주
함흥감옥	함경남도 함흥

출전: 「監獄位置·名稱」, 『官報』, 內閣法制局官報課, 1908.04.17.

1908년 형사국 주사로 임명된 나카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는 평양감옥 전옥, 경성형무소 전옥을 거쳐 서대문형무소 소장을 역임했다. 나카하시 마사요시의 『조선구시의 행정(朝鮮舊時の行政)』을 통해, 조선에 새롭게 개소한 8개 감옥과 신축된 경성감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 「監獄官制」, 『官報』號外, 內閣法制局官報課, 1907.12.18.

30) 「監獄位置·名稱」, 『官報』, 內閣法制局官報課, 1908.04.17.

융희 2년(1908년) 신 관계에 의해 감옥 8개소를 설치할 때에 살펴보면 비교적 감옥이라는 모양을 갖춘 설비가 있었던 것은 경성감옥 즉 이전의 종로의 전 옥서뿐이며 그 외의 감옥은 경찰 부속의 극히 불완전한 온돌식 감방이 2~3개 있을 뿐 직원이 집무할 장소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감옥의 개청에 앞서 사무실, 감방 및 취욕장(炊浴場)과 같은 설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법부는 가장 먼저 그 시행에 착수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차츰차츰 설비가 준공되었음을 알렸기 때문에 개청한 것인데 융희2년 6월에 8개소 감옥의 감방 수용 면적을 집계하면 겨우 293평3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sup>31)</sup>

일본식 행형 도입 이전의 조선에서 감옥시설은 형 집행 이전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감옥제도가 조선에 도입되면서 감옥시설은 수형자들이 형기를 채우기 위해 머물러야 할 생활공간이 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당시 감옥의 상황이 극히 불완전했으며, 온돌식 감방 2~3개와 직원 사무실, 취욕장 등 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감옥 개청하기 이전에는 죄수들의 수용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일제는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감옥을 신축하여 제대로 된 감옥의 형태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08년 10월 서대문에 경성감옥이 신축되었으며 이전의 감옥들과는 확연히 다른 설비를 갖추었는데 아래 인용문을 통해서 경성감옥의 상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신축감옥은 전부 목조로 하였고 외위(外圍)는 전면의 일부만 벽돌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연판을 붙인 판자로 변변치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사 및 부속건물은 80평 옥사 및 부속건물은 480평여를 가지고 모두 신축 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감방의 순경, 시찰, 환기 및 방한의 편의를 도모해 ‘丁’자형으로 하여 외초(外哨, 외부 보초)를 마련하여 순회로를 둔 것이다. 따라서 계호상으로는 편리하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만 외초식이기 때문에 감방 안은 낮에도 어둡고 몹시 음울하여 이 점만은 부족했다. 하지만 공장이 있고 욕실이 있고 그 외에 대강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옥사에 비하면 그 완전성에 있어서는 천양지차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수용력은 500명 정도였다. 이러한 신감옥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군대 해산병이 폭도화되어 있었고 성 밖은 매우 어수선하였고 신제(新帝, 순종) 즉위 후의 정무가 혼잡해 있어 개청도 못하고 폐쇄된 채로 조출하게 잡초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사법기관 창설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중략) 판결확정 수인은 모두 신(新)감옥으로 옮겨서 수용의 조절을 도모하였다.<sup>32)</sup>

신축된 경성감옥은 적절한 수용력과 함께 수형자들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 조선 최초의 근대 감옥으로 평가되었다. 감옥 내부에는 욕실, 공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형자들

31) 中橋政吉, 「朝鮮舊時の行政」, 『治刑協會』, 1936, 125-126쪽.

32) 中橋政吉, 「朝鮮舊時の行政」, 『治刑協會』, 1936, 127-128쪽.

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형무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 8개소 감옥의 감방 수용 면적을 합산한 결과는 293평이었지만, 신축된 경성감옥은 청사 및 부속건물이 80평, 옥사 및 부속건물이 480평으로 총 560평으로 부지 면적이 크게 확장되었다.

갑작스럽게 수형자들이 증가한 이유는 의병운동에 대한 토벌과 1910년대 이후 사법권 이양 이후 징역, 금고, 구류에 처해지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sup>33)</sup> 새롭게 입소하는 수형자들의 증가와 장기수까지 발생하면서 감옥은 항상 만원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감옥을 개축하거나 민가에 수용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수용소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1908년 11월 23일 법무령 제19호로 「감옥분감설치사무개시기일별정 건(監獄分監設置事務開始期日別定件)」<sup>34)</sup>을 제정하여 8개소의 분감이 전국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감옥 시설의 문제는 계속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희2년(1908년) 말에는 이미 2000명을 넘고 있었고 감방 면적 1평에 대한 평균 수용인원은 7명에 달했고 결국 옥사는 증만하여 넘쳐나게 되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집어넣어 수용했기 때문에 1평 평균 수용인원은 10여명 이라는 다수에 달했던 것이다. 그 무렵에는 재방자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씩 교대로 누운 것이다. 당시의 대구감옥의 감방은 전부 3실 총면적은 15평이었는데 재감자 150명을 수용했다. 또한 함흥감옥에서는 감방 내에 선반을 설치하여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2층처럼 꾸며 수용력을 증가시키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다만 천장이 낮은 온돌방을 2단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로로 누워 있을 수는 있었으나 일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밖의 감옥들도 협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대동소이 하므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여 힘들게 수용한 것이다. 그래야 1평당 평균 1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은 다인수를 구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구급상태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방안은 증열 때문에 모기도 파리도 들어오지 않았을 정도로 밤과 같이 재방자로 하여금 번갈아 가면서 대단선(大團扇, 큰 등글부채)으로 누운 자를 부채질 하여 약간의 고열을 견디게 했다.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생상태는 매우 불량하여 열사병이나 괴혈병 등이 계속 배출되어 사망률도 매우 높았던 것이다.<sup>35)</sup>

당시 감옥 내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감방 면적이 이미 1평에 7명을 수용하던 상황에서 더 많은 수용인원을 받아들여 10명이 교대로 자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대구 감옥 15평에 150명을 수용하는 상황이었고, 함흥감옥은 수용인원 초과로 방안에 선반을 설치해 2단으로 나누었지만, 누우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감옥의 상황도 위 감옥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수용시설의 열악함으로 결국에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후 1909년 일본에 조선의 감옥사무가 최종적으로 위임되어 일본식 행형이 조선에서 시작<sup>36)</sup>되었으며 1910년 10월 1일 일제는 총독부령 제11호<sup>37)</sup>로 감옥을 다시 개편하여 전국의 감옥

33)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22, 1999, 190-191쪽.

34) 「監獄分監設置事務開始期日別定件」, 『官報』, 內閣法制局官報課, 1908.11.23.

35) 中橋政吉, 「朝鮮舊時の行政」, 『지형협회』, 1936, 172~174쪽.

36) 「司法及監獄事務日本政府委託件」, 『官報』, 號外 內閣法制局官報課, 1909.07.24.

37) 「朝鮮總督府監獄及監獄分監을設置하야其名稱과位置를別表와又지定함이라」, 『朝鮮總督府官報』,

을 분감 8개소, 분감 13개소로 정해 운영했다.

새롭게 설치된 감옥은 이전과는 다르게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수형자들이 머물며 형기를 지내야 하는 시설로 바뀌었다. 이는 기존의 재판이나 형벌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용하던 시설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식 행형의 도입은 근대적인 것이었지만, 수형자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과거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잘 처벌하기 위해 처벌권을 확대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sup>38)</sup>

당시 감옥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감옥의 위생, 급식상태는 마치 짐승우리와 같았고 평당 7.9명이 수용되고 있었으며, 굶주림과 질병으로 수감 중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sup>39)</sup> 일본은 근대적인 행형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야만에서 문명으로 개선되는 진화라고 주장하였지만 감옥 시설의 부족과 수용인원의 초과는 수형자의 엄중 관리와 통제, 질서<sup>40)</sup>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열악한 감옥에 많은 사람이 수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감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소년과 성인이 구분 없이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면서 소년수들이 범죄 방법을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수용하는 분리수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21년 중앙기독교청년회 신흥우(申興雨)는 당시 성인과 소년이 함께 수용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감옥소에서 죄수로 있을 때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후에 말한 바와 같이 장년·소년의 구별이 없이 혼잡하게 생활하는 곳으로 그 중에서도 나타나는 악습이 없지 않고 또는 각각 자기가 범죄 할 때에 행하던 방법과 나타난 기능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모르던 것을 알기도 하며 생각지 못하던 것을 발견도 하여 옥에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에는 범법에 대한 지식이 한층 더 많은데 또는 일반 사회에 대하여 감사한 생각이 있기는 고사하고 무한한 악성정을 품고 나가는지라

...

감옥소는 죄범양성소라는 말을 하기까지에 미쳤으니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인과 결과를 등한(等閒)이 보게 하리요.<sup>41)</sup>

성인과 소년이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악영향으로는 소년들이 성인들에게서 범죄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감옥에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범죄 방법에 대한 지식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일부 죄수들은 출소할 때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일부 죄수들은 다시 범죄를 짓고 감옥에 수용되기도 한다. 이 문제점들로 인해, 감옥은 범죄양성소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과 소년이 함께 수용되는 것

---

朝鮮總督府, 1910.10.01.

38) 이종민, 「식민지 시기 형사 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근대 감옥의 이식·확장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5, 1999, 11쪽.

39) 대한민국 한국교정사편찬위원회, 한국교정사, 법무부, 1987, 304쪽.

40)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22, 1999, 192쪽.

41) 申興雨, 「少年犯罪와 우리 責任」, 『青年』 第1卷 第2號, 1921, 8-9쪽.

은 재범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소년의 범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년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장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체로 인식되었으며, 총독부에게는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었다.<sup>42)</sup> 그래서 소년들을 교육시키고 바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지만, 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졌다. 1910년부터 1942년까지의 전체 범죄자 중 미성년범죄자의 평균은 10.257%를 차지<sup>43)</sup>하고 있어, 조선의 전체 범죄에 비해서 소년의 범죄는 그리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sup>44)</sup> 소년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소년 범죄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미성숙한 소년들이 성인 범죄자와 함께 감옥에 수감되어 범죄 방법을 배우고 감옥 내의 열악한 시설로 인해 범죄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도 소년 범죄 문제로 인해 사회 치안의 위협을 느끼게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는 소년 범죄 예방이라는 이유로 소년형무소 설립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소년형무소 설립 이전부터 소년 범죄자와 성인 범죄자의 분리 수용이 실시되고 있었다. 1922년 9월 21일 관통첩 제86호<sup>45)</sup>에 따라 18세 미만의 수형자들은 특수수형자로 분류되어 귀주지(歸住地)의 위치, 성별, 형기에 따라 광주·영등포·공주·함흥·평양·대구·전주감옥 및 개성·김천·춘천·안동·마산·제주분감에 수용되었다. 여기서 개성분감과 김천분감은 이 시기부터 소년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여 이후에 소년형무소로 변경되어 계속 운영되었다.

개성분감은 1921년 3월 부령 제41호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에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1922년 9월 완공되었다. 청사 총 건평은 1,242평이었으며, 공사비는 21,5370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9월 24일 개청식이 거행되었다. 개성분감 개청식에서 사이트 마코토(齋藤實)총독은 소년 범죄자의 구금 및 처치에 필요한 시설 설비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번 준공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했고, 소년감옥을 통해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소년처치에도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했다.<sup>46)</sup> 그 후, 1923년 5월 5일 부령 제72호<sup>47)</sup>에 따라 감옥은 형무소로, 분감은 지소로 개칭되었다. 이로 인해 개성분감은 본감으로 승격되어 개성소년형무소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5월 9일에는 경성형무소와의 사무인계를 종료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소년형무소가 등장하게 되었다. 개성소년형무소는 1924년 1월 30일 관통첩 제8호<sup>48)</sup>에 따라 전 조선의 형무소 및 지소에 수감된 형기 1년 이상이며 18세 미만의 남자 수형자를 수용했다. 개성소년형무소는 전 조선의

42) 조은숙, 「근대계몽담론과 ‘소년’의 표상」, 『어문논집』 46, 2002, 23쪽.

43) 노수빈, 「식민지기 소년 범죄와 감화사업의 전개 - 조선총독부의 감화사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6쪽.

44) 「增加하는少年犯罪」, 『동아일보』, 1924.11.12.; 「少年犯罪增加 지능범이 늘어」, 『조선일보』, 1930.06.30.; 「增加하는少年犯罪」, 『동아일보』, 1924.11.12.; 「少年犯罪激增 半年間九百名」, 『동아일보』, 1931.10.09.; 「少年犯罪의 增加現象」, 『조선일보』, 1933.02.24.; 「激增하는思想,少年犯 專門取扱할 新課設置」, 『조선일보』, 1934.05.03.; 「少年犯罪激增으로 少年法制定準備」, 『조선일보』, 1934.05.05.;

45) 「特殊受刑者集禁ニ關スル件: 官通牒第86號」, 『官報』, 朝鮮總督府, 1922.09.21.

46) 「개성분감개청」, 『동아일보』, 1922.09.26.

47) 「朝鮮總督府監獄及分監名稱, 位置」, 『朝鮮總督府官報』號外, 朝鮮總督府, 1923.05.05.

48) 「特種受刑者ノ集禁ニ關スル件: 官通牒第8號」,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24.01.30.

소년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비 확장을 계획했다. 1925년에는 작업장 50평과 취사장 16평 5합을 증축했고, 1927년에는 감방 2동(190평), 작업장 1동(79평)을 증축했다. 이후에도 소년들을 수용하기 위해 계속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증축했다.<sup>49)</sup>

다음으로 김천소년형무소의 전신이었던 김천분감은 1921년 설치 당시, 소년과 성인을 함께 수용하는 일반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김천분감은 수형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감방 2동과 공장 1동, 취사장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후에는 청사, 창고 2동, 구치감, 병감, 중앙 간수소 및 감방 1동, 공장 1동 등이 추가로 신축되었다. 유년교장 신축 계획도 있었지만, 실제로 설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축 계획만으로도 김천분감에 소년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김천분감 또한 1923년 5월 5일 부령 제72호에 의해 대구형무소 김천지소로 변경되었다가, 1924년 4월 15일 총독부령 제14호<sup>50)</sup>에 의해 김천소년형무소로 변경되어 독립 운영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15일 관통첩 제99호<sup>51)</sup>에 따라 전 조선의 형무소 및 지소에 수감된 형기 1년 이상이며 20세 미만의 남자 수형자를 수용했다. 김천소년형무소에 수용된 만 23세 수형자는 일반수용 구분에 따라 수용 가능한 형무소로 수형자를 이감되었다. 단, 6개월 이내에 형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 김천소년형무소의 건물 배치는 김천분감 설치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공장 일부만이 증축되었다. 또한, 청사 전면부의 담장이 철거되어 청사가 담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 기법은 개성소년형무소에서 사용되었는데 일반 관청 양식의 청사를 전면에 노출시켜 외관상 형무소의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sup>52)</sup>

마지막으로 인천소년형무소는 이전에는 경성감옥 인천분감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1912년부터는 서대문감옥 인천분감으로 불리다가 1923년 3월 31일 총독부령 제62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소년형무소로의 변화는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1930년대 중반까지 소년형무소는 개성과 김천 두 지역에만 존재했으며, 두 형무소는 초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더욱 문제는 소년 범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sup>53)</sup> 이에 소년형무소 증축을 계획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sup>54)</sup> 인천에 새로운 소년형무소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36년 7월 10일 총독부령 제52호<sup>55)</sup>로 인천소년형무소가 설립되었다. 이후 1936년 형무소장회의에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소년 범죄의 증가로 인해 인천소년형무소를 설립하였으며, 소년행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년에 대한 교화의 철저를 기약했다.<sup>56)</sup> 1935년부터 3년간 인천소년형무소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45,000평의 부지에서 감방과 작업장을 건설했다. 이 중 35,000평은 농작지로 만들어 소년 수형자들에게 농작법을 가르쳤다.<sup>57)</sup> 건축공사는 1935년 10월에 시작하여 1938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재소자 수용에 필

49) 開城少年刑務所, 「開城少年刑務所要覽」, 『開城少年刑務所』, 1934, 3쪽.

50) 「明治43年朝鮮總督府令第11號中左ノ通改正ス」,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24.04.15.

51) 「特殊受刑者ノ集禁ニ關スル件: 官通牒第99號」, 『官報』, 朝鮮總督府, 1924.12.15.

52) 일제시기건축도면컬렉션, 「김천소년형무소」,

<https://theme.archives.go.kr/next/place/subject09.do?flag=18>, 2023.05.26.

53) 「少年犯罪의 增加」, 『조선일보』, 1938. 07. 24.; 「少年犯罪萬件을 超過 年復年增加의 一路」, 『동아일보』, 1939. 05. 07.; 「犯罪件數激增 首位依然少年竊盜 群山署管内調査」, 『동아일보』, 1939. 06. 24.

54) 「少年刑務所増設과 主要地 刑務所 獨房을 増築」, 『조선일보』, 1934.05.30.

55) 「監獄及監獄分監ノ名稱及位置 中左ノ通改正ス」, 『官報』, 朝鮮總督府, 1936.07.10.

56) 「統制法の朝鮮運用 範圍擴大豫想」, 『조선일보』, 1936.10.27

57) 일제시기건축도면컬렉션, 「인천소년형무소」,

<https://theme.archives.go.kr/next/place/subject09.do?flag=19>, 2023.05.26.

요한 보안시설, 사무실, 직원관사, 재소자 후생시설 등이 완비되었다. 인천소년형무소에는 1937년 3월 24일 관통첩 제6호<sup>58)</sup>에 따라 전 조선의 형무소 및 지소에 수감된 연령 18세 미만의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이며 초범자로 입소 당시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3년 수업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수용했다. 개성소년형무소가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성소년형무소 수형자들은 인천소년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소년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법원 근처의 형무소에 수용되었으나, 이후 소년들을 따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전 지역의 소년 범죄자들이 개성, 김천, 인천소년형무소에 수용되었다.<sup>59)</sup> 소년형무소에 수용된 소년들은 연령과 형기, 학력에 따라 수용되는 형무소가 달랐다.

표 4 일제강점기 소년수형자의 수

연도	소년형무소	개성소년형무소	김천소년형무소	인천소년형무소	합계
1921	-	-	182	-	182
1922	159	-	275	-	434
1923	177	-	205	-	382
1924	354	-	297	-	651
1925	412	-	374	-	786
1926	458	-	410	-	868
1927	456	-	425	-	881
1928	575	-	486	-	1,061
1929	674	-	553	-	1,227
1930	812	-	714	-	1,526
1931	748	-	615	-	1,363
1932	810	-	755	-	1,565
1933	811	-	731	-	1,542
1934	696	-	642	-	1,338
1935	822	-	676	-	1,498
1936	809	-	659	369	1,837
1937	752	-	733	487	1,972
1938	717	-	731	409	1,857
1939	766	-	710	412	1,888
1940	768	-	671	575	2,014

출전: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31년, 555쪽; 1940년, 385쪽.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개성, 김천, 인천소년형무소의 소년수형자 수를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소년수형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용되어 수형기간이 1년 이상인 수형자가 누적되어 있어, 단순히 소년 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년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이 일제강점기 당시 소년형무소뿐만 아니라 보호 단체,

58) 「刑務所收容區分ニ關スル件: 官通牒第6號」, 『官報』, 朝鮮總督府, 1937.03.24.

59) 소녀의 경우에는 소년과 달리 별도의 형무소는 없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전 조선의 형무소 및 지소에 수감된 연령 18세 미만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의 여성 수형자를 집금하였다.

감화원 등 소년 사법 보호 기관에도 있었기 때문에 소년 범죄자가 증가 여부를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 성인 범죄보다 범죄율이 낮아도 사회적으로는 소년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sup>60)</sup> 그 이유로는 일제강점기 소년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말 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소년은 성인이 되기 전의 존재로서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로 새롭게 이해되었다. 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소년 범죄자와 불량 소년은 교화와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성인 범죄자들과 분리하여 수감할 필요성이 있어 소년형무소가 설립되었다. 소년형무소는 소년 범죄자의 감화 교정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장에서는 소년형무소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추적한다.

### 3. 소년형무소의 운영과 조선소년령의 제정

#### 1) 소년형무소의 운영 실태

소년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소년형무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소년들의 입소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범자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누범자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소년형무소로 압송되어 소장과 먼저 면접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일 이내에 독방에 수용되어 검사로부터 참고서 및 본인의 말을 기반으로 면장, 학교장, 경찰서장, 고용주, 양친, 친족 등에게 조회장(照會狀)을 보내 가급적 상세하게 본인의 개성을 조사했다. 아니면 계원(係員)이 방문하여 본인을 조사하거나 계원들끼리 모여 수용 후의 방침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 개성 조사는 교화의 기초 및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 계원은 신중한 태도로 임했다. 그리하여 개성에 따라 교화 방침을 결정하고 소정의 교화에 힘썼다. 교화방침 결정 후, 소년의 취급법은 누진적 계급 처우법을 이용했다.<sup>61)</sup> 누진적 계급 처우법에 따라 소년들은 등급이 정해지며, 각 등급에 따라 입욕(入浴)의 횟수와 작업 상여금, 운동, 독서 등 생활 전반에 차별을 두었다.

소년형무소 내에서 소년의 처우는 1923년 2월 제정된 「소년수형자처우규정(少年受刑子處遇規程)」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 「소년수형자처우규정세칙(少年受刑子處遇規程細則)」도 제정하여 소년 처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소년수형자처우규정」 제1조에서는 ‘소년수형자는 품행의 양부(良否, 좋음과 나쁨) 및 작업의 성적에 따라 계급처우를 실시한다.’라고 언급하여, 품행과 작업 성적에 따라 점수를 매겨 등급을 구분하는 점수제를 실시했다.

한 기자는 개성소년형무소를 방문하여 규정에 따라 점수제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년형무소에서는 누진적 계급 처우법에 따라 먼저 전체를 두 종류로 구분했다. 제1류는 범죄습관이 없는 자, 제2류는 범죄 습관이 있는 자로 구분했다. 그리고 제1·2류에서도 등급을 나누었는데, 3급은 전반적으로 가장 엄한 것, 2급은 특히 교양에 엄한 것, 1급은 교양과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것, 특별급은 사회생활 준비하는 것

60) 「少年犯罪의 增加現象」, 『조선일보』, 1933.02.24.; 「不良少年이漸增 感化機關殆不足」, 『동아일보』, 1936.06.12.

61) 朝鮮教育會, 「文教の朝鮮-開成少年刑務所訪問記」, 『朝鮮教育會』7月號, 1926, 87쪽.

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등급마다 엄연한 차별을 두었다. 소년들은 각 등급마다 배급품, 온욕의 횟수, 작업 상여금, 운동, 독서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특별급이 가장 우대되었으며, 1급보다 특별급, 2급보다 1급, 3급보다 2급이 더 많은 우대를 받았다. 그리고 특별급은 이미 석방이 임박한 자로 대우받았으며, 운동에서는 정구(庭球), 풋볼 등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각 등급의 진급에 있어서 품행은 물론이고 학업, 작업 등의 성적을 매일 채점하여 매월 1회 개인별로 심사하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진급할 수 있었다. 소년들은 모두 검은 색 복장에 금장(襟章)을 달아 각 등급을 숫자로 표시했다. 또한 소년들은 소장을 만나면 부동의 자세로 경례를 올리고 규율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sup>62)</sup> 소년형무소는 점수제를 통해서 일상생활 곳곳에 수형자를 통제하고 있었다.

표 5 개성소년형무소 입소 시 교육 정도

연도 교육정도	1926	1928	1931	1932	1933	1938	1939	1940	1941	계
무필	197	231	185	281	243	412	375	331	384	2,639
1학년 이하	90	140	136	168	152	84	78	143	78	1,069
1학년 정도	26	40	28	50	50	45	62	85	102	488
2학년 정도	30	53	50	79	85	44	55	66	116	578
3학년 정도	18	19	27	45	47	24	23	19	43	265
4학년 정도	8	15	11	28	27	16	11	15	22	153
5학년 정도	3	5	7	10	16	1	7	3	13	65
6학년 정도	1	1	2	4	5	2	1	3	5	24
6학년 이상	1	5	3			4		2	3	18
계	374	509	449	665	625	632	612	667	766	5,299

출전: 開城少年刑務所, 「少年受刑者ノ統計」, 『開城少年刑務所』, 1926년; 1928년; 1931년; 1932년; 1933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소년형무소에서는 교육을 통해 소년들을 교화하고자 했다. 1923년부터 1943년까지 교육별 신수형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 중등, 고등의 비율은 약 24%이며, 무학과 무필의 비율은 약 75%이다.<sup>63)</sup> 그리고 위의 표 5를 통해서 소년형무소 입소자의 교육 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무필이거나 1학년 이하, 1학년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무필과 1학년 이하가 전체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6학년 이상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3학년 그 이상의 교육 정도를 가진 입소자의 수는 증가하였고, 1학년이나 1학년 정도의 입소자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무필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소년형무소에서는 교육을 통해 소년들을 교화하고자 했다.

소년형무소에서는 「소년수형자교육규정(少年受刑子教育規程)」<sup>64)</sup>에 따라, 소년들을 교화

62) 朝鮮教育會, 「文教の朝鮮-開城少年刑務所訪問記」, 『朝鮮教育會』 7月號, 1926, 87-88쪽.

63) 국가통계포털 KOSIS, 「교육별 신수형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tblId=CS351001942&vw\\_cd=MT\\_CHOSUN\\_TITL\\_E&list\\_id=999\\_Q02\\_M01\\_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쪽ath=MT\\_CHOSUN\\_TITLE&쪽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tblId=CS351001942&vw_cd=MT_CHOSUN_TITL_E&list_id=999_Q02_M01_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쪽ath=MT_CHOSUN_TITLE&쪽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2023.05.23

64) 開城少年刑務所, 「少年受刑者ノ統計」, 『開城少年刑務所』, 1928, 135-137쪽.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제1조에서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전공실용을 취지로 하고 교과는 실생활에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을 선택하여 간이속성으로 교수를 함’이라 하여, 수형자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 교육을 시행했다. 동시에, 수형자들의 감정을 순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소년수형자의 인격의 도야를 도모하고 신체의 발육과 세상에 필요한 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요지로 하여 소년수형자의 교육을 진행했다.<sup>65)</sup>

소년형무소 내의 교육은 보통학교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졸업연한을 3학년으로 설정하고 총 6학기로 나누었다.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보습과에서 1년 동안 교육받았으며, 이 과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었다. 교과과정으로는 수신(修身), 일본어, 조선어, 산술, 실업, 체조 구성되었으며, 실업에 관해서는 본인의 직업 희망과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되었다. 이후 졸업연한은 보통학교와 마찬가지로 6학년으로 설정되었으며, 보습과도 계속해서 운영되었다. 교과과정 또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업 과목의 경우에는 5~6학년과 보습과를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했다.<sup>66)</sup> 체육은 1932년부터 국민보건체조(라디오체조)를 함께 매일 아침 30분간 체조를 했다. 그리고 다음 해 1933년 11월부터는 정신수양과 정조(情操)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 라디오 청취를 시행했다.

소년형무소에서는 교육과 함께 작업을 통해 소년의 교화를 도모했다. 작업의 경우 ‘수형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근검역행의 양습(良習, 좋은 습관이나 풍습)과 직업 기능을 습득하여 석방 후의 생활 실력을 부여하는 것이 형무소 작업의 주요 목표였다.’<sup>67)</sup> 소년형무소에서는 수형자들이 석방 후에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통해 기술 습득과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1922년 11월 위탁업 양말공을 시작으로, 이후 인쇄공, 봉투공, 재봉공, 모자공, 대리석공, 목공, 구두공, 죽공, 경사공 등 다양한 관사업(官事業)을 진행했다. 초기에는 위탁업으로는 재봉공, 목공 등 단순한 작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1924년 이후 관사업이 중심이 되어, 수형자의 형기, 능력, 거주지, 기타 일반 개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 직업 관련 일을 수행했다.

이처럼 소년형무소 내에서는 교육과 작업을 통해 누진적 계급 처우법을 적용하여 운영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범죄자들을 교화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소년들은 형무소 내의 생활이 통제적이고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소년들은 형무소에 입소하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생활하였지만, 이제는 높은 담벼락 앞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방 안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어진 일과 규칙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여야만 했다.

소년형무소를 방문한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사보타주(Sabotage)’같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소년들은 낮에는 10시간 일을 하고 밤에 2시간은 학과 공부를 했는데 1기부터 6기까지 나누어 보통학교 교과서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소년형무소는 강당 등 다른 학교와 비슷한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교회소나 목욕탕, 의료실 등의 기본적인 시설들도 갖추어져 있었다. 더불어 소년형무소 직원들은 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다루기가 쉬워서 감옥 안에서 죄수라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 ‘저 아이’라 부르고 소년들도 간수를 선생이라 불렀다. 그리고 다른 형무소보다 친절하게 대우한다고 하여 면회 같은 것도 부모의 청구가 있으면 제한 없이 가능하며, 면회 방식도 다른 감옥과

65) 開城少年刑務所, 「少年受刑者ノ統計」, 『開城少年刑務所』, 1928, 3쪽.

66) 朝鮮教育會, 「文教の朝鮮-開城少年刑務所訪問記」, 『朝鮮教育會』7月號, 1926, 88쪽.

67) 朝鮮總督府法務局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治刑協會』, 1938, 33쪽.

달리 면회실에서 서로 만나 볼 수 있다고 한다.<sup>68)</sup> 이 기록에서는 소년형무소가 일반형무소와는 다른 온건한 방식으로 소년들을 교화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형무소 생활은 작업이 중심이 되어 교화보다는 노동이 강조되어 작업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년소설인 전영택의 『누이』에서도 소년형무소 내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다. 주인공 윤찬이 소년형무소에 수감되는데 처음에는 모든 일이 처음 겪는 일이라 흥미를 느끼지만 차차 갑갑증을 느끼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체조 하고, 조식을 먹은 뒤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은 후에는 잠을 자야하는 판에 박힌 일상에 갑갑증을 느낀다. 형무소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산으로 들로 뛰어나며 돌아다니던 주인공에게는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왔다.<sup>69)</sup> 소년형무소 생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간혀있어야 하는 상황과 반복되는 일상에 고통스러움을 느꼈으며, 형무소 내의 일상은 대체로 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석방 후에도 소년들에 대한 관리는 계속되었다. 일본 본토에서는 면수보호사업(免囚保護事業)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조선에도 각 형무소 소재지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졌다. 개성소년형무소에서 소재지에 석방된 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성회(大成會)라는 기관을 설치했다.<sup>70)</sup> 대성회에서는 형무소 직원이 무보수로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경비는 국고보조금, 독지가의 기부, 개성소년형무소 직원의 봉급의 일부를 할애하여 유지되었다. 대성회에서는 소년들의 석방 후를 크게 고려하여 귀주(歸住) 안전을 위한 조치나 취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임 준비계를 두기도 했다. 준비계는 취직처를 살펴보고 부모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을 불러들여 장래의 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귀향의 여비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성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출소 후 2년간은 양친, 친족, 고용주 혹은 거주지의 경찰서 또는 면장과 연락하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했다.<sup>71)</sup> 재범 방지를 위해 면수보호사업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에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경비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웠으며 소년형무소를 포함한 모든 형무소에서 매년 평균 25,000명의 범죄자가 출소했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겨우 1,300명 내외로 빈약한 상황이었다.<sup>72)</sup>

석방 후에도 소년들이 모두 대성회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며, 도움을 받더라도 다시 범죄자가 되어 형무소에 수용되는 소년들이 많았다. 소년들뿐만 아니라, 전체 형무소에서 재범자와 누범자가 계속 증가하였고 총 수형자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범죄율이 증가했다.<sup>73)</sup> 재범이 높은 이유로는 감옥을 나와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경우, 실직하여 생활이 곤란한 경우, 생업이 없어진 경우, 석방 후 돈이 없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sup>74)</sup>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배제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년형무

68) 「開城少年監(개성소년감)을 보고」, 『동아일보』, 1923.08.05.; 「開城少年監(개성소년감)을 보고(續)」, 『동아일보』, 1923.08.19.

69) 「누이(3)」, 『조선일보』, 1934.01.09.

70) 「減刑과滿期로 出獄者七十名」, 『동아일보』, 1928.02.09.; 「開城少年刑務所에서 七十二出獄」, 『조선일보』, 1928.11.12.; 「來十三日을 期(기)해 免囚保護테一」, 『조선일보』, 1936.09.06.

71) 「文教の朝鮮-開成少年刑務所訪問記」, 『朝鮮教育會』 7月號, 1926, 88-89쪽.

72) 「刑務所를 나오는 사람들 每年平均二萬五千 그들은 果然再生하는가? 免囚保護의 強化가 急務」, 『매일신보』, 1935.08.15.

73) 「受刑者의 大多數는 再犯者와 累犯者」, 『조선일보』, 1936.12.19.; 「年六百名釋放者中 半數가 再犯入獄」, 『조선일보』, 1938.09.24.; 「再犯者가 五割以上」, 『조선일보』, 1939.12.28.;

74) 「犯罪少年少女救護 하라」, 『동아일보』, 1938.05.12.

소에서는 소년들을 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 교화와 감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천소년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소년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돈을 절취하여 다시 체포되어 수감되거나<sup>75)</sup> 재범자와 누범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소년형무소에서 탈옥하는 소년들이 발생<sup>76)</sup>하면서 소년형무소 내에서 시행되는 교화, 감화 교육의 효과가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재범율의 증가와 소년형무소 수용인원의 초과로 인해 조선총독부는 새로운 소년형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인천소년형무소를 설립했다. 인천소년형무소는 개성, 김천소년형무소와는 달리 수형자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 처우를 달리했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받은 교육 정도에 따라 소년 범죄자들을 분류하여 처우했다.

일본인다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소년과 그렇지 않은 소년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보다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소년들은 직접 일본어를 통해 교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교육을 받은 소년들과 받지 못한 소년들 간의 차이는 교육 시설과의 관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소년형무소는 소학교 3년 정도의 학력을 가진 범죄소년과 그렇지 않은 소년을 분리 구금하여, 교양도가 비교적 높은 자를 구금해 교화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sup>77)</sup>

일본 본토에 설치된 히메지소년형무소(姫路少年刑務所), 모리오카소년형무소(盛岡少年刑務所)에서는 18세 미만인 자, 18세에 준하는 자, 18세 이상이지만 초범자를 수용했다.<sup>78)</sup> 일본에서도 학력이 수용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인천소년형무소가 새롭게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소년형무소는 소년형무소 중에서도 가장 교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곳은 소년들의 정신과 생활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교무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 인천소년형무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교직원들이 배치되어 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교장도 있었으며, 교실은 모두 4개가 있었다. 이 교실의 크기와 설비는 보통학교나 소학교 교실만큼 우수했다.<sup>79)</sup>

1937년 5월 2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5호 「조선행형교육규정(朝鮮行刑教育規程)」<sup>80)</sup>이 제정되면서 소년형무소의 교육 내용이 다시 재편되었다. 수형자의 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을 교수하며 국민도덕의 이해와 실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소년 교육 이외에도 연령 30세 미만인 소년들이 학력이 낮은 자에 대한 간이교육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교과목과 교수 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규정의 실시를 형무소장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였다.<sup>81)</sup> 일반적으로 간이보통과, 보통과 두 개의 과로 나누지만 소년형무소는 추가로 보습과를 따로 두어 교육을 진행했다. 간이보통과는 간이학교의 교과서를 2년간 학습하여 수업했으며, 보통과는 공립보통학교 제5, 6학년의 교과서를

75) 「出獄途中竊盜 마춤내 피착」, 『동아일보』, 1928.08.16.

76) 「少年刑務所 脫獄未遂」, 『동아일보』, 1923. 07. 25.; 「破獄犯의 逮捕」, 『조선일보』, 1924. 06. 27.; 「金泉少年刑務所 強盜罪囚脫獄」, 『동아일보』, 1927. 07. 22.; 「開城少年刑務所 罪囚二名脫獄」, 『동아일보』, 1928. 06. 23.; 「金泉刑務所 罪囚가 脫獄」, 『동아일보』, 1929. 10. 12.; 「開城監獄에서 少年囚脫獄」, 『동아일보』, 1931. 02. 13.; 「仁川少年刑務所 最初の脫獄犯」, 『조선일보』, 1936. 09. 04.; 「少年囚脫獄逃走」, 『조선일보』, 1936. 12. 29.

77) 內山隆治, 「治刑-朝鮮に於ける少年行刑(一)」, 『治刑協會』 17, 1939, 4쪽.

78) 盛岡少年刑務所, 「盛岡少年刑務所】刑務一覽 昭和6年」, 『盛岡少年刑務所』, 1937, 15쪽.; 姫路少年刑務所, 「少年受刑者統計一斑 昭和13年度」, 『姫路少年刑務所』, 1940, 7쪽.

79) 楊美林, 「少年刑務所見參記」, 『朝鮮日報社出版部』, 1940, 81쪽.

80) 「朝鮮行刑教育規程」,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37.05.24.

81) 治刑協會, 「朝鮮の行刑制度」, 『治刑協會』, 1938, 64쪽.

1년간 학습하고 수업했다. 마지막으로 보습과는 고등소학교의 교과서를 1년간 학습했다. 다른 형무소와 달리 소년형무소는 특별학급을 설치하여 1년간 더 학습했다.<sup>82)</sup>

교육규정의 재편 이유는 일본어를 널리 보급하려는 가운데 일반 형무소에서는 교육 실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국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통제하기 위해 「조선행형교육규정」을 제정했다. 「조선행형교육규정」은 소년형무소를 포함한 전체 형무소에서 시행된 규정이다. 1935년 말 조사에 따르면 소년형무소를 제외한 전 조선에서 형무소 수형자 중 약 3분의 1이 문맹자이고 약 3분의 1이 언문만 읽을 줄 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작업·교회 및 기타 정신적 감화의 노력과 교육의 보급으로 일본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국민성과 국민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수형자들의 국민도덕 이해와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경비 부족, 설비 미비, 교직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목표만큼 실행되지 못했다.<sup>83)</sup> 전시 상황에 접어들면서 조선총독부는 수형자들의 국민성 함양에 노력을 기울였다. 작업과 교육을 통해 교화, 감화를 진행하면서 교육을 보급하여 일본어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국민성을 함양해야 국민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 보급은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졌고 조선총독부는 이 교육규정을 통해서 황국신민을 기르고자 했다.

작업 종류는 형무소 초기와 큰 변화는 없었다. 김천소년형무소에서는 소년들이 간수의 작업시작 호령에 맞추어 작업에 임하였는데 작업 종류로는 목장갑·그물·노끈의 생산과 목공, 인쇄 작업 등이었다.<sup>84)</sup> 또한, 인천소년형무소에서는 벗짚일(새끼, 가마니 같은 것을 만드는 일), 목공, 재봉, 인쇄, 벽돌 굽는 일 등 소년들의 성격과 소질에 맞는 직업으로 상당한 지도 기수(技手)가 배치되어 가르치고 있었다. 모든 작업 과정은 간수의 감시 하에 이루어졌다.<sup>85)</sup>

일제는 형무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업의 향상과 수형자들의 황국신민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다음은 1939년 6월 23일 미나미 지로 총독이 형무소장 회의에서 수형자들의 형무작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각건대 형무관리의 직책은 수형자의 인격을 도야하여 그로 하여금 개과천선시켜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게 하여 국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중략) 원래 이 작업의 목적은 근면노력의 양습(良習)과 직업에 대한 자신력을 얻게 함을 주 목적으로 할 것이나 마침 중일전쟁의 장기화는 금후 모든 작업 재료 입수의 어려움과 그 등귀로 인한 경비의 팽창에 의하여 형무작업의 운영에 큰 곤란을 나타날 것이다. (중략) 대책인 물자통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는 작업 대책을 공구(功究) 수립하여 모든 곤란을 극복하고 더욱 작업의 향상 발전을 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86)</sup>

미나미 지로 총독은 형무관리를 통해 수형자의 인격을 개선하고 개과천선시켜 충량한 황

82) 開城少年刑務所, 「治刑-教育始業式概要」, 『治刑協會』 15, 1936, 58쪽.

83) 朝鮮總督府, 「朝鮮之行刑制度」, 『治刑協會』, 1938, 64-66쪽.

84) 久具勇雄, 「治刑-金泉의少年たち」, 『治刑協會』 20, 1942, 15쪽.

85) 楊美林, 「少年刑務所見參記」, 『朝鮮日報社出版部』, 1940, 82쪽.

86) 「비전향수형자의 절무를 기하라, 형무소장회의에서 미나미총독 훈시」, 『동아일보』, 1939. 06. 23.

국민민으로 성장시켜 국가의 인적자원 확보를 강조했다. 수형자들은 또한 형무작업을 통해 전시에 부족한 물자를 생산하여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수형자들의 작업은 전시 상황이 되면서 전쟁을 지원하는 작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작업의 본래 취지는 지식 기능을 전수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전시가 되면서 수형자들의 형무작업은 부족한 물자 생산에 동원되었다. 교화 및 사회적응이라는 형무작업의 본래 취지는 사라졌고, 노동을 통해 국가에 봉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질되면서 수형자들은 강제로 형무작업에 동원되었다.

전쟁이 심화되고 형무소 내의 생활도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형무소 내의 분위기는 군대처럼 더욱 엄격해져갔다. 김천소년형무소에서는 소년들이 아침마다 광장에 모여 국민의례를 행하고 체조를 했다. 그리고 소년들은 총을 움켜쥐고 맨발로 정렬하여 계호과장의 호령에 따라 분열행진(分列行進)을 했다. 나팔졸인 한 소년이 나팔을 불어 나팔소리를 내면 소년들은 총을 어깨에 대어 행진하기 시작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향해 결눈질 한번 하지 않고 행진했다. 소년들은 분열행진이 끝나면 교련을 하러 이동했다.<sup>87)</sup> 이처럼 소년들은 형무소에서 군대식 훈련을 받으면서 엄격하고 통제된 분위기에서 생활을 했다. 일제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소년들이 훌륭한 황국신민으로 성장하고 국가를 위해 봉공하기를 기대했다.

## 2) 조선소년령의 제정과 전시체제기 소년형무소의 운영

전쟁이 심화되면서 일제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1941년 11월 23일 칙령 제775호로 「국민근로보국협력령(國民勤勞報國協力令)」이 제정되어, 제3조에 따라 국민근로보국대에 협력하는 자로 연령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와 연령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자를 동원하도록 했다. 조선인 노동력 동원은 「국민근로보국협력령」 통해 시작되었지만, 제10조 7항에 따라 법령에 의해 구금 중인 자는 제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선총독부는 수인들도 인력자원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행정국장이었던 마사키 아키라(正木亮)는 전쟁 일선에 수인들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대신 행정보국대(行刑報國隊)를 편성하여 수인들을 출역하여 취업시키기로 결정했다.<sup>88)</sup> 수인들을 전쟁터가 아닌 공장이나 조선소 등에 동원했으며 산업전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봉사를 강요했다. 성인들은 산업전사로 명명되어 전쟁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에 더해 소년들까지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조선총독부는 범죄소년과 우범소년을 인력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년법 제정에 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소년법 제정 요구는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있었지만, 조선총독부는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sup>89)</sup>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소년범죄율이 높지 않았으며, 당장의 식민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겨 소년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소년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소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노동을 할 수 있

87) 久具勇雄, 「治刑-金泉の少年たち」, 『治刑協會』 20, 1942, 15쪽.

88) 김용우, 「(水村自傳)矯正 半世紀의 외길 人生」, 『국민서관』, 1997. 35쪽.

89) 「少年法實施如何」, 『동아일보』, 1922.05.28.

는 자들을 모두 동원했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는 여전했고 이에 범죄소년까지 노동에 동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을 황국신민으로 갱생시킨다면 충분히 인력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2년 3월 23일 제령 제6호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을 제정했다. 미야모토(宮本) 법무국장은 조선소년령에 관련하여 경성중앙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소년보호의 새로운 제도는 소년에게 특별한 보호처분 제도와 형사처분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보호처분 제도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하였으나 형사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아직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불량성을 가지고 그 성정, 생활환경 등에 의하여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교양(教養)하여 심신을 교정 보호하는 제도이며 (중략)

소년보호제도의 주요 사명은 다른 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애정으로 그 범죄성을 교정보호하고 충량한 소(少)국민으로 그 본분을 다함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여 국가치안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미영 타도의 장기총력전 아래 우리 국민의 책무를 받들어 봉공을 해야 할 것 또는 우리와 함께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병역을 지원하고 그 밖의 직역에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충량한 소국민을 길러 국가의 막대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sup>90)</sup>

법무국장은 「조선소년령」을 제정한 목적으로 범죄예방과 교정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소년들을 충량한 소국민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동원하고자 했다. 형무소에 수감되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소년수들은 강제동원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년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봉공을 강요하는 등 소년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이어서 소년보호의 새로운 제도인 「조선소년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조선소년령」은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구분된다. 보호처분 제도는 형사소추가 필요 없는 자와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했다. 형사처분 제도는 죄를 범해서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소된 소년이 처분 대상이었다. 형사처분의 선고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적용하지 않고, 단기형과 장기형을 정해서 선고하는 이른바 부정기형을 적용하고 가석방의 조건을 완화 하는 등 「조선형사령」 및 「조선감옥령」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sup>91)</sup> 총독부는 「조선소년령」을 통해서 소년의 보호와 교양이라는 근본정신에 기초하여 처벌을 적용한다고 하였지만, 가석방제도와 사형과 무기징역, 부정기형을 통해 소년들의 형기를 조절하여 소년들을 통제하고자 했다.

표 6 1942년 「조선소년령」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조항

	조항 내용
대상소년	20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90) 宮本元, 「戰爭下少年保護の新發足」, 『(朝鮮)司法協會雜誌』 21, 1941, 56쪽.

91) 宮本元, 「戰爭下少年保護の新發足」, 『(朝鮮)司法協會雜誌』 21, 1941, 56쪽.

심판기관	소년심판소
보호처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건부로 보호자에게 인도</li> <li>2. 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li> <li>3. 조선총독부 소년보호사의 관찰에 부침</li> <li>4. 조선총독부 감화원에 송치</li> <li>5. 조선총독부 교정원에 송치</li> <li>6. 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 (4조)</li> </ol>
형사처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6세 미만 사형 및 무기징역을 내리지 않는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언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부과한다.(7조)</li> <li>2. 소년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로 처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단기와 장기를 정하여 언도해야 한다. 단,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를 5년으로 단축한다. 형의 단기는 5년을, 장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8조)</li> <li>3. 징역 또는 금고의 언도를 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한 감옥 또는 특별 분계를 설치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한다. (9조)</li> <li>4. 소년으로 징역 또는 금고를 언도받은 자에게는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 대해서는 7년 (2) 제7조에 의한 경우에는 3년 (3)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의 단기의 3분의 1. (10조)</li> <li>5. 무기형을 언도받은 자가 가출옥을 허가받은 후 그 처분을 취소당하는 일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7조와 8조에 의한 형을 언도받은 자가 석방 허가를 받은 후 그 처분을 취소당하는 일없이 형의 집행을 행한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1조)</li> <li>6. 소년에게 노역장 유치의 언도를 하지 아니한다. (13조)</li> </ol>

「조선소년령」은 제1장 통칙, 제2장 보호처분, 제3장 형사처분, 제4장 소년심판 절차, 제5장 형사철자, 제6장 벌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위 표는 제2장 보호처분과 제3장 형사처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소년들의 전시 인적자원 동원과 관련된 조항으로 정리한 것이다.

「조선소년령」 제2장 보호처분에서 제4조 1항인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해 6가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①조건부로 보호자에게 인도 ②사원, 교회, 보호단체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 ③조선총독부 소년보호사의 관찰에 부침 ④조선총독부 감화원에 송치 ⑤조선총독부 교정원에 송치 ⑥병원에 송치 또는 위탁까지 총 6종류로 보호자에게 인도를 제외한 모든 처분은 위탁과 송치 처분으로 이루어져 소년들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처분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소년

들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강제로 노동에 동원할 수 있었다.

보호처분에서 사원, 교회, 보호단체 등으로 소년들을 위탁받은 이 시설들은 취업이라는 형태로 소년들을 산업전선에 보내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또한 감화원 및 교정원 등에서도 퇴원생들이 제철, 제강, 알루미늄 공장에 취업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감화원생들은 일제 탄광 등에 강제 동원되는 등 보호처분의 형태로 소년들이 강제동원 되기도 했다.<sup>92)</sup>

「조선소년령」 제3장 형사처분제도는 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데 16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다. 또한 형의 단기와 장기를 설정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방식이었다. 형의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기준을 만족한 자에게는 가석방을 선고하였는데 그 기준으로는 무기형에 대해서는 7년, 16세 미만에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이 주어졌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도 폐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완화된 형사처분을 통해 소년들의 개선을 기대하고<sup>93)</sup> 이를 통해 소년들을 쉽게 통제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는 누진적 계급 처우법으로 등급이 높은 자에게 가석방을 선고하거나 수형자의 개선된 정도에 따라 형을 단기와 장기로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해 소년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했다.<sup>94)</sup> 당시 감옥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가석방과 부정기형을 통해서 빠르게 감옥을 벗어나고자 했으며, 이들은 보국대로 노동력 동원이 되어도 감옥에서 나가고자 하였다. 1943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김광섭의 옥중일기를 살펴보면 수형자들이 노동에 동원되어도 감옥을 나가고 싶어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95)</sup> 해남도로 떠나는 보국대원들은 “자유스럽게 넓어진 천지를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동경하여 갈 뿐이다. 그들은 장기수들이 아니요 건장한 청년들로서 자원(自願)에 의하여 울적한 감옥을 떠나고자” 라고 하여 열악한 감옥을 떠나 보국대로 자원하여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자료는 일반 형무소에 수용된 성인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당시 소년형무소에서 누진적 계급 처우법을 통해서 소년들을 처우하고 있었으며, 소년들의 형기를 가석방과 부정기형을 활용하여 적용했다. 또한, 소년형무소에서 보국대로 차출된 소년들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때 소년들의 상황도 위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인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 없어서 보국대를 편성하여 수인들을 공장에 출역시키거나 형무소에서 군수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소년형무소에서 보국대를 편성하여 수인들이 차출되었는데, 소학교 3년 정도 학력을 가진 인천소년형무소의 수형자들은 함흥형무소 소속 흥남 제1보국대로 편성되어, 흥남 비료공장에 동원되었다. 소학교 3년 이하 학력 소지자들 또한 보국대에 편성되었는데, 개성소년형무소는 흥남 제2보국대로, 김천소년형무소의 20세 미만의 준소년수들은 진남포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평남 진남포제련소로 동원되어 각각 흥남과 진남포 지역으로 출역되었다.<sup>96)</sup>

1943년 1월에는 개성소년형무소와 김천소년형무소 각각 서흥지소와 안동지소를 설치해 소년들을 수용했다. 서흥지소는 18세 미만의 형기 1년 이상의 소년을 수용하였으며, 안동지

92) 「잘 있거라 仙甘島- 이제부터 鑛業戰士- 第二回 鍊成兒四十名 씩씩하게 進發」, 『매일신보』, 1944.06.02.

93) 「朝鮮矯正院令及 朝鮮少年令의 大要 法務局長 談」, 『매일신보』, 1942.04.03.

94) 이종민, 「태평양전쟁 말기의 수인(囚人) 동원 연구(1943~1945)\*- 형무소 보국대를 중심으로 -」, 『한일민족문제학회』 33, 2017, 83-84쪽.

95) 김광섭, 「나의 獄中記: 日記 手記 自傳의 에세이」, 『창작과 비평사』, 1976, 52쪽.

96)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 340쪽.

소는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의 소년을 수용했다. 그리고 농업 혹은 특수 작업에 적합한 자를 수용했다.<sup>97)</sup> 서흥과 안동지소에 수용된 소년들은 일반 노무동원이 어려운 수형자들로 체력이 약하거나 집단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보국대로 차출되지 않았다.

홍남보국대는 성인남녀 외에도 소년수형자에게도 작업을 부과했다. 그 결과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수인들은 보수도 없이 전쟁의 후방에서 노무 동원되어 전쟁 지원 작업을 하게 되었다. 홍남 비료공장으로 출역된 수인들은 비료를 포대에 담은 단순한 일을 하였지만 공장 내에 산더미 같이 쌓인 비료를 일일이 인력으로 옮겨 담아야 했다.<sup>98)</sup> 이 일은 단순한 일이었지만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수형자들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다. 일제는 보국대로 차출된 수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봉공을 강조하고, 산업전사라 명명하여 계속해서 보국대로 출역시켜 노동시켰다.

일제는 소년들을 노동에 동원한 후, 신문을 통해 소년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기사는 「조선소년령」 시행 후 3년 후 소년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소년들이 동원지에서 충실한 국민으로 사회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조선소년령」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연성도장에 입소한 소년들은 3개월간의 기초훈련을 하고 전력증강을 위하여 군수 공장에 나아가서 거룩한 땀을 흘리며 국가에 봉공하게 된다. 3개월 동안의 기간은 대단히 짧았으나 부모처럼 여기는 직원들과 가정으로 믿은 도장의 문을 나설 때는 그동안에 괴로웠던 일과 즐거웠던 일이 한 토막의 환등처럼 눈앞에 어른거리며 자연히 뜨거운 눈물로 두 뺨을 적시게 된다고 한다. 연성도장을 나서서 산업전사로 출발하는 날부터 그들은 맑은 대기를 마음껏 마시고 널따란 대지를 힘차게 딛고 서서 용감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처음에 도장의 문을 두드렸을 때는 전부가 소위 ‘어쩔 수 없는 소년들’ 뿐이었으나 이제는 충실한 국민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미우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정열을 오로지 전력 증강에 기울이고자 각 공장과 사업장에 우렁찬 진군을 개시했다. 기지는 다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름배인 작업복을 입고 씩씩하게 일하고 있는 소년들의 군상을 생산증강의 결전장인 ○○공장으로 향했다.<sup>99)</sup>

일제는 산업전선에 동원된 소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기사로 게재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활은 병영 생활과 다를 바 없었다. 소년들은 오전 5시에 일어나 분대장의 호령에 따라 점호를 마친 다음 궁성요배를 한다. 조례를 마친 뒤에 아침밥을 먹고 오전 6시 반에 공장으로 향해 오후 5시까지 공장에서 일을 했다. 돌아와서는 분대장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었다.<sup>100)</sup> 이렇듯 하루하루가 병영의 연장으로 소년병으로 산업 전선에 인적자원의

97) 「刑務所收容區分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43.01.19.

98) 김용우, 「水村自傳」矯正 半世紀의 외길 人生, 『국민서관』, 1997, 50쪽.

99) 「二葉塾의 更生道場報告 朝鮮少年令施行三周年 ③ - 増産에 씩씩히 進軍 聖汗 흘리며 敢闘하는 少年兵群像」, 『매일신보』, 1945.03.30.

100) 「二葉塾의 更生道場報告 朝鮮少年令施行三周年 ③ - 増産에 씩씩히 進軍 聖汗 흘리며 敢闘하는 少年兵群像 - 増産場에 힘찬 進發」, 『매일신보』, 1945.03.30.

로 일을 행했다. 공장에 입소한 소년들의 하루 성적은 일반 보국대 한 사람에 보다 평균 3할 이상 더 일하고 있다고 하고 이들의 작업 능력에 대해서 공장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하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sup>101)</sup>

하지만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공장, 당국과 일반 공원들은 소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했다. 소년들이 쉬는 날 목욕탕이나 영화관, 음식점에 가게 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팔지 못한다’라던가 ‘보통 사람들과 같이 목욕탕에 갈 수 없으니’하고 이곳저곳에서 배척을 당했다.<sup>102)</sup> 사회에서 소년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소년범들은 식민당국의 우려 속에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밖으로 불러 나와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소년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소년형무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소년들은 조선인들에게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소년들을 미래에 황국신민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선총독부는 소년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년형무소를 설립했다. 또한, 성인과 소년이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범죄를 배우고 다시 사회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도 설립 이유였다.

가장 먼저 설립된 개성소년형무소는 1923년 부령 제72호에 의해 개성분감이 본감으로 승격함에 따라 개성소년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24년 관통첩 제8호에 따라, 이 형무소는 전 조선의 형무소 및 지소에 수감된 형기 1년 이상이며 18세 미만의 남자 수형자를 수용하게 되었다. 김천소년형무소는 1924년 4월 대구형무소 김천지소에서 김천소년형무소로 변경되었다. 동년 12월 관통첩 제99호에 따라, 이 형무소는 전 조선의 형무소 및 지소에 수감된 형기 1년 이상이며 20세 미만의 남자 수형자를 수용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천소년형무소는 1936년 총독부령 제52호로 설립되었다. 이 형무소는 연령 18세 미만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초범으로 입소할 때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3년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각 형무소마다 조금씩 다른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소년들을 수용했다.

본문에서는 개성소년형무소에 발행한 통계자료를 통해 형무소에 수용된 소년들의 죄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 소년들이 빈곤으로 인한 절도죄로 감옥에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빈곤으로 인한 절도죄가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 절도죄 다음으로는 사기 및 공갈, 횡령죄 등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조선총독부와 조선인 민간사회는 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를 예방하고자 했다. 당시에는 소년 범죄 원인을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언론을 통해 소년 범죄의 원인을

101) 「二葉塾의 更生道場報告 朝鮮少年令施行三周年 ③ - 増産에 씩씩히 進軍 聖汗 흘리며 敢鬪하는 少年兵群像 - 評判의 少年挺身隊」, 『매일신보』, 1945.03.30.

102) 「二葉塾의 更生道場報告 朝鮮少年令施行三周年 ③ - 増産에 씩씩히 進軍 聖汗 흘리며 敢鬪하는 少年兵群像 - 敎護엔 濫情과 理解」, 『매일신보』, 1945.03.30.

개인적 원인으로 강조하여 소년 범죄 발생과 증가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1923년 2월 제정된 「소년수형자처우규정」에 따라 소년형무소는 점수제를 도입하여 운영되었다. 이 점수제는 품행과 작업 성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등급을 구분하여 처우의 차별을 두었다. 특별급-1급-2급-3급 등급에 따라 배급품, 입욕의 횟수, 작업 상여금, 교육, 운동, 독서 등을 우대했다. 소년형무소 내의 생활은 교육과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형무소 내의 소년수형자 교육은 「소년수형자교육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수형자들이 퇴소 후에도 사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교육을 통한 교화를 진행하고 수형자들의 감정을 순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과목은 수신, 일본어, 조선어, 산술, 실업, 체조로 구성되었으며 학급마다 시간이나 교과목이 다르게 진행되었다. 1937년 5월 24일 조선총독부훈령 제35호 「조선행형교육규정」이 제정되면서 소년형무소의 교육 내용이 다시 재편했는데 간이보통과, 보통과 2과로 나누었고 소년형무소는 보습과를 따로 두어 교육을 진행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소년들을 교화시키고자 하였으며 특히 일본어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작업 또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형자가 석방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유로 시행했다. 형무소 내의 작업은 대부분 관사업을 위주로 하여 생활 작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형무소 내의 생활은 학과교육과 작업실과로 구분되어 점수제로 운영했다. 하지만 소년형무소가 시행한 교화방식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석방된 소년들은 소년형무소에서 배운 작업기술을 활용하기 보다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총독부가 소년형무소를 설립해 소년 범죄를 예방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소년 범죄는 계속 발생하였고 더해서 재범자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년형무소는 전쟁 자원을 지원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소년수형자들은 전쟁 물품을 제작하거나 공장에 파견되어 인력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수인들도 전쟁터에 동원하고자 했지만 당시 행형국장이었던 마사키 아키라는 전쟁 일선에 수인을 보낼 수 없다고 하여 그 대신 행형보국대를 편성하여 수인들을 공장에 출역시켰다. 수인들은 전쟁터가 아니라 공장이나 조선소 등에 강제동원 되었다. 소년수들 또한 마찬가지로 보국대로 차출되어 공장 등에서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조선소년령」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소년령」을 소년사범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령이라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소년들을 인력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었다.

「조선소년령」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조항을 살펴보면, 보호처분 대상소년은 형사소추가 필요 없는 자와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 형사처분 대상은 죄를 범해서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소된 소년이다. 「조선소년령」은 소년들에게 형을 무겁게 내리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선고하여 이들을 교화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 법령이다. 하지만 보호처분 중에서 소년들을 보호기관이나 감화원, 교정원에 수용하는 위탁처분은 실제로 이 기관들이 취업알선을 빌미로 소년들을 강제동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가석방과 부정기형을 통해 형기를 조절하여 보국대로 차출되어 공장 등에서 노동하게 되었다.

소년형무소는 형무소라고 명명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소년원과 형무소 사이의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지만, 일반 형무소와 달리 소년들을 교화·감

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아이들을 죄수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업 위주의 일과, 군대식 생활, 열악한 감옥 환경 등으로 인해 조선총독부가 목표로 했던 소년의 교화 및 감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년형무소는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이에 소년 수형자들 또한 전쟁 물자를 제작하거나 공장에 동원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소년형무소의 설립 목표였던 소년의 교화와 감화를 통한 소년범죄 예방은 더 이상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았고, 대신 전쟁 수행을 위한 운영만이 남아있었다.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소년이 가지는 역할과 성격이 변화하면서 그에 맞게 소년형무소의 운영과 성격도 이에 맞게 변화했다. 초기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소년에게 주목했지만, 당장의 식민지 안정을 위해 소년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식민당국이 전쟁으로 인해 소년이 활용 가능한 존재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맞게 소년형무소의 운영 방식과 성격이 소년들의 성격 변화와 함께 변모했다.

## 《참고문헌》

### 1. 신문·잡지 및 자료

《조선일보》, 《동아일보》, 《每日申報》, 《朝鮮新聞》, 《조선중앙일보》

內閣法制局官報課, 『朝鮮』

統監府, 『統監府公報』 號外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 1920, 1931, 1940.

申興雨, 「少年犯罪와 우리 責任」, 『青年』 1, 1921.

朝鮮教育會, 「文教の朝鮮-開成少年刑務所訪問記」, 『朝鮮教育會』 7月號, 1926.

開城少年刑務所, 『少年受刑者ノ統計』, 1926, 1928, 1931, 1932, 1933, 1938, 1939, 1940, 1941.

金泉少年刑務所, 『青年受刑者統計報告』, 1929, 1932.

開城少年刑務所, 『開城少年刑務所要覽』, 1934.

森浦藤郎, 「治刑-犯罪上より觀たる朝鮮の社會相(一)」, 『治刑協會』 15, 1936.

中橋政吉, 「朝鮮舊時の行政」, 『治刑協會』, 1936.

開城少年刑務所, 「治刑-教育始業式概要」, 『治刑協會』 15, 1936.

朝鮮總督府法務局行刑課, 「朝鮮の行刑制度」, 『治刑協會』, 1938.

內山隆治, 「治刑-朝鮮に於ける少年行刑(一)」, 『治刑協會』 17, 1939.

楊美林, 「少年刑務所見參記」, 『朝鮮日報社出版部』, 1940.

宮本元, 「戰爭下少年保護の新發足」, 『(朝鮮)司法協會雜誌』 21, 1941.

玉名友彦, 「少年保護に就て」, 『朝鮮司法保護協會』 2, 1941.

### 2. 단행본

김광섭, 「나의 獄中記: 日記 手記 自傳的 에세이」, 『창작과 비평사』, 1976.

김용우, 「(水村自傳)矯正 半世紀의 외길 人生」, 『국민서관』, 1997.

김천소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사』, 2002.

권인호, 「行刑事」, 『국민서관』, 1973.

대한민국 한국교정사편찬위원회, 「한국교정사」, 『법무부』, 1987.

법무부 교도관학교, 「韓國行刑史」, 『법무부』, 1967.

이종민, 박경목, 이승윤, 「행형제도 감옥. 1. 식민지 감옥의 설치와 운영」, 『동북아역사재단』, 2021.

인천소년교도소, 「인천소년교도소사」, 『인천소년교도소』, 1990.

정혜경,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아이들」, 『섬앤섬』, 2019.

### 3. 논문

강경래, 「韓國における少年法制の展開 : 特に植民地少年法制の影響を中心に」,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동경, 2004.

강경래, 「식민지 조선의 소년 범죄자 처우에 관한 고찰 - 소년교육이념의 자생적 발전의

- 저해와 후퇴」, 『소년보호연구』 29, 2016.
-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현철,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소년불량화 담론의 형성」, 『교육사회학연구』 12, 2002.
- 곽병선,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한국소년정책학회』 26, 2014.
- 노수빈, 「식민지기 소년 범죄와 감화사업의 전개 - 조선총독부의 감화사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경목,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경성감옥 설치와 본감·분감제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46, 2008.
- 박정란, 「일제강점기 감화사업의 성격과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3, 2021.
- 소영현, 「청년과 근대-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회』 11, 2005.
- 소현숙, 「경계에 선 고아들 - 고아문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사업」, 『사회와 역사』 73, 2007.
- 소현숙, 「식민지시기 '불량아' 담론의 형성」, 『사회와 역사』 107, 2015.
- 신정윤, 「일제시기 감화사업의 운영과 성격 - 영흥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신정윤, 「일제하 미성년자의 범죄문제와 조선총독부의 대책」, 『역사와 세계』 55, 2019.
- 신정윤, 「전시체제기 소년사범 보호정책의 성격과 식민지 특성: 「朝鮮少年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5, 2020.
- 윤종우, 「한국 소년교도소의 발전방향」, 『교정복지연구』 68, 2020.
- 이경숙, 「최윤호의 생애와 교육론 -불량소년소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2022.
-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커니즘 연구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종민, 「식민지 시기 형사 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근대 감옥의 이식, 확장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5, 1999.
- 이종민, 「1910년대 근대감옥의 도입 연구」, 『정신문화연구』 22, 1999.
- 이종민, 「태평양전쟁 말기의 수인(囚人) 동원 연구(1943~1945)-형무소 보국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33, 2017.
- 정혜정, 「일제의 감화교육에 나타난 근대교육의 성격-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감화원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9, 2007.
- 조경희, 「`온정`과 `교화`의 식민주의 -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회구제사업과 그 임계-」, 『역사문제연구』 15, 2011.
- 조은숙, 「근대계몽담론과 소년의 표상」, 『어문논집』 46, 2002.
- 조준현·김성언,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재소자의 노동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천정환, 「인천교정기관의 역사와 평가」, 『인천학연구』 21, 2019.
- 최배은, 「근대 청소년 담론 연구」, 『한국어와 문화』 10, 2011.
- 탁희성·안성훈, 「교도작업의 개선방안 연구 : 교도작업의 법적 지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4. 웹 사이트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index.do>)

디지털김천문화대전(<http://gimcheon.grandculture.net>)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일본국립국회도서관(<http://www.ndl.go.jp>)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https://theme.archives.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부록》

<부록 1> 「감옥관제(監獄官制)」(1907.12.18.)

조항내용	
제1조	감옥은 법부대신의 관리에 속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장(掌)함.
제2조	감옥의 위치 및 명칭은 법부대신이 이를 정함.
제3조	공소원(控訴院) 검사장은 법부대신의 명을 받아 그 관할지 내에 있는 감옥을 감독함.
제4조	각 감옥을 통하여 左의 직원을 置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典獄 9명(奏任)</li> <li>• 看守長 專任 54명(判任)</li> <li>• 監獄醫 專任 12명(奏任 또는 判任)</li> <li>• 通譯 專任 9명(判任)</li> </ul>
제5조	전옥은 감옥의 장으로 법부대신 및 검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감옥의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부하관리를 감독하며 간수이하의 전퇴(進退)로를 전임함.
제6조	간수장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감옥사무에 종사하며 간수이하를 지휘 감독함.
제7조	감옥의는 상관의 명을 받아 의무에 종사함.
제8조	통역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통역 및 문서번역에 종사함.
제9조	감옥에는 제4조에 게(揭)한 직원이외에 간수 및 여감취체를 두고 판임 대우로 함.
제10조	법부대신은 필요에 따라 분감을 둘 수 있다. 분감장은 간수장으로 하고 전옥의 지휘를 받아 분감의 사무를 장리하고 부하를 지휘 감독함.
제11조	전옥의 유고시에는 상석 간수장이 이를 대행하고 분감장의 유고시도 위와 같음.
부칙	본령은 율희 2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함.

출전 : 內閣法制局官報課, 『內閣法制局官報』號外, 1907.12.31.

<부록 2> 「특수수형자집금에 관한 건(特殊受刑者集禁ニ關スル件)」(1922.09.21.)

집금감옥	압송감옥 또는 분감명	구금된 자의 종류		
		연령	성	형기
경성감옥 개성분감	서대문, 인천, 춘천, 공주, 청주, 대전, 함흥, 원산, 평양, 신의주	18세 미만	조선인 남	6월 이상
	청진, 강릉, 군산	同	同	1년 이상
대구감옥 김천분감	대구, 부산, 마산	同	同	6월 이상
	안동, 진주	同	同	1년 이상
광주감옥	목포, 전주, 군산	同	同	6월 이상
	청주	同	同	1년 이상
영등포감옥	평양, 신의주, 서흥, 대구, 김천, 부	同	일본인 남	6월 이상

	산			
	공주, 청주, 함흥, 원산, 진남포, 마산, 공주, 목포, 전주, 군산	同	同	10월 이상
	청진, 강릉, 해주, 안동, 진주	同	同	1년 이상
서대문감옥 춘천분감	서대문	동	여	1년 이상 (춘천, 원주, 양 법원 지청 관내 귀주자)
공주감옥	청주	同	同	3월 이상
함흥감옥	원산	同	同	同
평양감옥	진남포, 서흥	同	同	同
	신의주	同	同	6월 이상
대구감옥	김천	同	同	3월 이상
대구감옥 안동분감	대구	同	同	1년 이상 (안동 방면 귀주자)
부산감옥 마산분감	부산	同	同	3월 이상
	진주	同	同	6월 이상
광주감옥	목포	同	同	6월 이상
목포감옥 제주분감	목포	同	同	6월 이상 (제주도 귀주자)
전주감옥	군산	同	同	3월 이상

출전 : 「特殊受刑者集禁ニ關スル件: 官通牒第86號」, 『官報』, 朝鮮總督府, 1922.09.21.

<부록 3> 「조선총독부 감옥 및 분감 명칭, 위치」(1923.05.05.)

명칭	위치
경성형무소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서대문형무소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	강원도 춘천군 춘천면
영등포형무소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공주형무소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면
공주형무소 청주지소	충청북도 청주군 사주면
대전형무소	충청남도 대전군 외남면
함흥형무소	함경남도 함흥군 북주동면
함흥형무소 원산지소	함경남도 원산부
함흥형무소 강릉지소	강원도 강릉군 강릉면
청진형무소	함경북도 청진부
평양형무소	평안남도 평양부
평안형무소 진남포지소	평안남도 진남포부

평양형무소 금산포지소	황해도 은율군 북부면
신의주형무소	평안북도 신의주군 광성면
해주형무소	황해도 해주군 해주면
해주형무소 서흥지소	황해도 서흥군 서흥면
대구형무소	경상북도 대구부
대구형무소 김천지소	경상북도 김천군 김천면
대구형무소 안동지소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면
부산형무소	경상남도 부산부
부산형무소 마산지소	경상남도 마산부
부산형무소 진주지소	경상남도 진주군 평거면
광주형무소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
목포형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이노면
목포형무소 제주지소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면
전주형무소	전라북도 전주군 이동면
전주형무소 군산지소	전라북도 군산부
개성소년형무소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출전 : 「朝鮮總督府監獄及分監名稱,位置:府令第72號」,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23.05.05.

<부록 4> 「소년수형자처우규정(少年受刑子處遇規程)」(1923.02.)

	조항내용
제1조	소년수형자는 품행(操行)의 양부(良否) 및 작업의 성적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계급처우를 행한다.
제2조	새로 입소한 자는 분류를 지정하여 제3급에 편입한다. 다른 형무소로부터 전입된 자는 전(前)형무소에서의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상당한 급에 편입한다.
제3조	조행의 양부는 매월 다음의 표준에 따라 표시한다. 1. 행상(行狀, 태도) 선량하고 개선(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優) 2. 행상 초량(稍良, 조금 양호함)하고 개선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甲) 3. 행상 보통인 자(乙) 4. 행상 불량한 자(不良)
제4조	작업의 성적은 매월 다음의 표준에 따라 채점한다. 1. 작업과정 외 3분(分) 이상을 종료한 자 (시간과정 업무에 있어서는 1등 공전의 급여를 받는 자) 1개월 360점 2. 작업과정을 종료 이상의 자 (시간과정 업무에 있어서는 2등 공전의 급여를 받는 자) 1개월 300점 3. 작업과정 7분(分) 이상을 종료한 자 (시간과정 업무에 있어서는 3등 공전의 급여를 받는 자) 1개월 240점 4. 작업과정 7분(分) 미만의 자 (시간과정 업무에 있어서는 등외공전의 급여를 받는 자) 1개월 180점 월 중도에 입소하거나 또는 질병 그 외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구별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을 한다.
제5조	작업 또는 학업에 면려(勉勵) 노력하고 열심의 도가 현저한 자 그 외에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는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개월 120점 이내의 선행점을 부여한다.
제6조	징벌에 붙여야 할 불량행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120점 이내의 감점을 한다. 감점은 선행점, 작업점으로부터 순차로 이를 감한다. 감소를 다하기에 이르러 그친다.
제7조	진급은 매월 다음의 표준에 의해 이를 행한다. 3급에서 2급 제1류 1. 품행(操行) 優로서 작업점, 선행점을 통산하여 득점 180점에 달한 자. 2. 품행(操行) 甲으로서 동(同) 240점에 달한 자. 3. 품행(操行) 乙로서 동(同) 300점에 달한 자 제2류 1. 품행(操行) 優로서 작업점, 선행점을 통산하여 득점 360에 달한 자 2. 품행(操行) 甲으로서 동(同) 480점에 달한 자 3. 품행(操行) 乙로서 동(同) 600점에 달한 자 2급에서 1급 제1류 1. 품행(操行) 優로서 작업점, 선행점을 통산하여 득점 960점에 달한 자 2. 품행(操行) 甲으로서 동(同) 1,200점에 달한 자 제2류 1. 품행(操行) 優로서 작업점, 선행점을 통산하여 1,440점에 달한 자 2. 품행(操行) 甲으로서 동(同) 1,800점에 달한 자 1급에서 특별급 1. 품행(操行) 優로서 작업점, 선행점을 통산하여 득점 3,600점에 달한 자 득점수는 매 급에서 이를 갱신한다. 단, 표준을 넘은 점수는 다음의 급의 득점에 통산한다.
제8조	징벌에 처해야 할 자는 정상에 따라 1급 또는 2급을 내리고, 또한 제6조의 제한을 넘은 득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할 수 있다. 강급(降級)된 자가 회오(悔悟)의 정이 현저하고 진급표준 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한 때에는 순차적으로 복급시킬 수 있다.
제9조	분류편입급의 지정 및 변경 또는 강등복급의 선행점의 부여 및 감점은 직원 회의에 부하여 심사한 다음에 결정한다.
제10조	분류 및 계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징장(徽章)을 부여한다.
제11조	정신이 낮은 자 그 외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직원 회의에 부하여 심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우 할 수 있다.

출전 : 「少年受刑者ノ統計」, 『開城少年刑務所』, 1928년, 124-127쪽.

<부록 5> 「소년수형자처우규정세칙(少年受刑子處遇規程細則)」(1923.07.)

	조항내용
제1조	<p>새로 입소하는 자는 분류를 지정해 제3급에 편입한다.                      다른 소년형무소에서 전입한 자는 당해 형무소에서의 성적 및 의견을 심사하여 상당급에 편입한다. 단 전(前)형무소에서의 특점은 그 채점 표준을 짐작하여 이를 통산한다.                      전항 이외의 형무소에 전입한 자는 분류를 지정하여 좌(左)의 예에 의하여 상당급에 편입한다.</p>
	<p>1.                      제1류 제2급에 편입하는 것                      전(前)형무소에서 행상(行狀) 사정 약간의 의견                      행상 선량 재소기간 1월 이상                      행상 양 재소기간 1월 반 이상                      행상 보통 재소기간 2월 이상</p>
	<p>2.                      제1류 1급에 편입하는 것                      전(前)형무소에서 행상 사정 약간의 의견                      행상 선량 개선의 상태임 재소기간 6월 반 이상                      행상 양 개선의 상태임 재소기간 8월 이상</p>
	<p>3.                      제2류 제2급에 편입하는 것                      전형무소에서의 행상 사정 약간의 의견                      행상 선량 재소기간 2월 이상                      행상 양 재소기간 2월 반 이상                      행상 보통 재소기간 3월 반 이상</p>
	<p>4.                      제2류 제1급에 편입하는 것                      전형무소에서의 행상 사정 약간의 의견                      행상 선량 개선의 상태임 재소기간 10월 이상                      행상 양 개선의 상태임 재소기간 1년 이상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유별(類別)의 3급에 편입한다.</p>
제2조	<p>새로 입소하는 자는 계급처우규정을 설명하고 지정한 분류 및 편입한 급별을 선고함으로써 다른 형무소에서 전입한 자에게 붙여 다음과 같다.</p>
제3조	<p>계급처우에 의하여 분류 및 급별은 신분장부, 작업일과표, 교육부, 교회부, 공장명부, 점검부 및 감방명찰 등에 명시한다.</p>
제4조	<p>분류 및 계급을 표시해 징장(徽章)은 - 모양으로 하고 상부에 호칭 번호(番號)를 횡서(橫書)하고 하부에 계급을 한자로 나타낸다.                      분류의 구별은 제1류는 적(赤)2류는 녹(錄)제1급 이상은 백(白)으로 표시한다.</p>

제5조	<p>수지(受持)교사 및 담당간수는 수행자의 일상 행동을 시찰해 향상개전의 유무 취업진(就業振) 또는 주의사항 등을 조행보고표로써 보고한다.</p> <p>전항의 보고는 계호계(戒護係)에 있어서 이에 의견을 붙여 직원회의에 제출하여 조행(操行)의 사정을 행한다.</p> <p>조행사정의 결과는 이를 조행판정표에 기재한다.</p>
제6조	<p>조행은 좌(左)의 표준에 의하여 사정(査定)한다.</p> <p>1. 향상 선량 양 보통 불량</p> <p>2. 개전의 상태</p> <p>현저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오(悔悟)의 사려 깊고 자기 교정에 힘써 누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li> <li>있는 것</li> <li>- 범죄를 자각해 회오 반성의 염(念)있는 것</li> </ul> <p>인정하기 어렵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를 부인(否認)하거나 기존의 불량 행위에 대한 반성의 사념이 부족한 것</li> </ul>
제7조	<p>작업계는 매월 초에 있어서 전월 분의 작업일과를 정리하여 과정 외 5분 이상, 과정 외 3분 이상, 과정 요(了) 이상, 과정 7분 이상, 과정 7분 미만 및 시간 과정에 구별해 처우 담당자에 회부하여 처우담당자는 작업점을 계산하여 이를 채점 진급표에 기재하기로 하고</p>
제8조	<p>월(月)의 중도(中途)에 입소한 또는 병기 그 외에 사유에 의하여 취업할 때 도 점수 계산은 왼쪽의 예에 따른다.</p> <p>과정 요부(了否)는 실 취업 일수에 의하여 이를 정한 채점은 작업 표준 점수를 30분해 이에 취업일수를 오르는 것을 득점으로 삼는다.</p>
제9조	<p>전업(轉業)의 경우에 있어서 채점은 왼쪽의 예에 의한다.</p> <p>작업의 도합에 의하여 월(月)의 중도(中途)에 전업한 때에는 그 달에 한하여 본인의 이익이 되는 채점방법에 의하여 단 한 달의 7일 이내에 전업한 경우에는 전업 후의 성적에 의거한다.</p> <p>기타 전업은 실 취업 일수에 응하여 전조의 방법에 기초해 채점한다.</p>
제10조	<p>경감(輕減) 과정자의 채점은 경감과정의 요부(了否)를 기초로서 계산할 수 있다.</p>
제11조	<p>선행점은 직원회의의 심사에 붙여 그 결정사항은 조행판정표에 기재한다.</p>
제12조	<p>선행의 채점은 좌의 예에 의한다.</p> <p>1. 조행선행점</p> <p>동수(同囚)간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기율을 중시하며 항상 근신을 표하여 중의 모범이 되는 자</p>

	<p>40점 이내</p> <p>2. 학업선행점 학업에 면려(勉勵)하여 성적 특히 우수한 자</p> <p>40점 이내</p> <p>3. 작업선행점 (1) 작업과정 외 5분 이상 마친 자</p> <p>25점 이내</p> <p>(2) 작업과정 끝낸 이상으로 제품 특히 우등한 자</p> <p>20점 이내</p> <p>(3) 작업과정을 끝내고 면려노력의 실적을 열거하고 있는 자 단 과정의 7분 이상 완료자에 한한다.</p> <p>15점 이내</p> <p>(4) 1, 2등 공전(工錢)의 급여를 받은 성적이 우수한 자</p> <p>25점 이내</p>
제13조	전조 각호의 선행점 부여에 관한 의견은 조행보고표로 보고한다. 단 작업에 관한 보고는 일과표에 의한다.
제14조	불량 행위가 있을 때는 신분장부 시찰표로 보고해 직원회의에 부치다.
제15조	<p>불량행위의 감점 및 강급(降級)은 좌(左)의 예에 의한다.</p> <p>1. 사범 경미하게 징벌에 이르는 것 50점 이내 단 특히 필요를 인정하여 징벌에 처해질 경우에는 120점을 감하는 것을 얻는다.</p> <p>2. 상우(賞遇)가 정지된 것 정지기간 중 1급 적은 2급 1일 매번 7점 이내</p> <p>3. 자변(自辯)의 의식(衣食)이 정지되거나 경병금(輕屏禁)에 처해지는 것 1일 매번 10점 이내</p> <p>4. 작업상여금 계산고를 감삭된 것 150점 이내</p> <p>5. 상우를 폐지하고 또는 중병금(重屏禁)에 처해지는 것 1급 적은 2급 득점 전부</p>
제16조	조행의 판정, 작업성적의 계산, 선행의 결정 그 외에 사유에 의해 점수의 증감을 위해 또는 급별의 승강을 위하는 처우 담임자는 그 매번 본인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관계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각 담임자 전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장하는 제표표, 장부, 명찰 및 기타 정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17조	<p>정신저격자(精神低格者), 병자 기타 특수 사정에 의해 규정에 의해 계급처우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류 제2급에 준하는 처우를 위한다.</p> <p>전항의 처우자에 대하여 식량, 의류 및 와구(臥具)등의 급여에 관해서는 의무계의 의견을 구해 적당이 이를 정하는 것을 얻는다.</p>

출전 : 「少年受刑者ノ統計」, 『開城少年刑務所』, 1928년, 129-135쪽.

<부록 6> 「소년수형자교육규정(少年受刑子教育規程)」(1923.07.)

제1조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오로지 실용을 취지로 교과는 실제적 생활에 직접적 사항을 선택하여 간이 속성으로 교수할 것이다.
제2조	교수의 정도 및 요지는 보통학교 규정에 준거해 전 교과의 졸업연한을 3학년으로 6학기로 나눈다.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정도의 자를 위해 보습과를 설치하고 보습과의 과정을 전기 후기로 나누어 1년 만에 수료하게 한다. 단 아직 교육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얻는다.
제3조	학기는 4월 1일 및 10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30일 및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	각 학기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교과의 졸업을 인정하는 것은 학기 말 시험 및 평소의 성적을 맞추어 고사하고 이를 정하여 고지식(告知式) 행하게 하여 학업의 진보 특히 현저한 자는 성적을 고사하고 임시로 진급하는 것을 얻는다.
제5조	교과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의 별표에 의한다. 실업에 관한 교과에 취직해서는 본인의 직업 희망 그 외에 개인적 사정을 짐작하여 교수한다.
제6조	새로 취학한 자가 있을 때는 그 학력을 사정(査定)해 상당(相當)학기에 편입한다.
제7조	퇴학자가 있을 때는 그 매번 학업의 성적을 조사한다.
제8조	휴청일에는 수업을 휴지한다.
제9조	편입, 임시 진급 퇴학에 관한 그 매번 신분장시찰표로 보고한다.
제10조	학업성적의 평점은 갑을병정으로 표시해 병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는 합격자로 한다.
제11조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및 출석부로 정리한다.
제12조	취업자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서적잡기장 및 문구류를 대여 또는 급여한다.

출전 : 「少年受刑者ノ統計」, 『開城少年刑務所』, 1928년, 135-136쪽.

<부록 7> 「특수수형자집금에 관한 건(特種受刑者ノ集禁ニ關スル件)」(1924.01.30.)

처우구별	집금범위				집금형무소
	압송형무소명	연령	성	형기	
소년처우	전형무소 및 지소	18세 미만	남	1년 이상	개성소년형무소
	평양 대구	同	여	8월 이상	서대문형무소
청년처우	전형무소 및 지소	20세 미만	남	8월 이상	대구형무소 김천지소
여수형자 집금	서대문		여	1년 이상 (춘천원주방면 귀주자)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
	청주		同	3월 이상	공주형무소

	원산		同	同	함흥형무소
	진남포, 서흥		同	同	평양형무소
	신의주		同	6월 이상	
	대구		同	1년 이상 (안동방면 귀주자)	대구형무소 안동지소
	부산		同	3월 이상	부산형무소 마산지소
	진주		同	6월 이상	광주형무소
	목포		同	6월 이상	
	목포		同	3월 이상 (제주도 귀주자)	목포형무소 제주지소
	군산		同	3월 이상	전주형무소
1	18세 미만 형기 1년 이상의 남수형자로 소년처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소년처우를 하는 남자 수형자로서 만 20세에 달하는 자(단 3월 내에 형기가 종료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구교도소 김천지소로 이를 집금한다.				
2	20세 이상 23세 마만의 남수형자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년처우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대구교도소 김천지소에 이를 집금한다.				
3	대구형무소 김천지소에서는 수형자 만 23세에 이를 때에는 일반 수용구분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형무소로 이감한다. 단 6월내에 형기 종료하는 자는 이 구분에 있다				
4	재감 중의 특수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 지휘는 그 형무소장 또는 지소장에 대하여 이를 위해 형무소장 또는 지소장은 본 집금구분에 따라 이감 절차를 행한다.				
5	새로 입감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검사 본 집금구분에 따라 집금형무소의 장에 대하여 형의 집행 지휘를 한다.				
6	범죄즉결례 시행 수속 제4조에 의해 형무소의 송치하는 여수형자에 대해서는 범죄즉결관서의 장은 본 집금구분에 따라 집금하여 형무소에 이를 송치한다.				

출전 : 「特種受刑者ノ集禁ニ關スル件: 官通牒第8號」,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24.01.30

<부록 8> 「특수수형자집금에 관한 건」(1924.12.15.)

처우구별	압송형무소	연령	성	형기	집금형무소
소년처우	전형무소 및 지소	18세 미만	남	1년 이상	개성소년형무소
	평양 대구	同	여	8월 이상	서대문형무소
청년처우	전형무소 및 지소	20세 미만	남	1년 이상	김천소년형무소
여수형자 집금	서대문형무소		여	1년 이상 (춘천원주방면 귀주자)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

	청주지소		同	3월 이상	공주형무소
	원산지소		同	同	함흥형무소
	진남포지소		同	同	평양형무소
	서흥지소		同	同	
	신의주형무소		同	6월 이상	
	대구형무소		同	1년 이상 (안동방면 귀주자)	대구형무소 안동지소
	부산형무소		同	3월 이상	부산형무소 마산지소
	진주지소		同	6월 이상	
	목포형무소		同	3월 이상	광주형무소
	전주형무소		同	同	
	군산지소		同	同	
1	18세 미만 형기 1년 이상의 남자 수형자로 소년처우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소년처우를 하는 남자 수형자로서 만 20세에 달하는 자(단 3월 내에 형기가 종료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김천소년형무소로 이를 집금한다.				
2	20세 이상 23세 마만의 남수형자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년처우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김천소년형무소에 이를 집금한다.				
3	김천소년형무소에서는 수형자 만 23세에 이를 때에는 일반 수용구분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형무소로 이감한다. 단 6월내에 형기 종료하는 자는 이 범위에 있게 한다.				
4	재감 중의 특수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 지휘는 그 형무소장 또는 지소장에 대하여 이를 위해 형무소장 또는 지소장은 본 집금구분에 따라 이감 절차를 행한다.				
5	새로 입감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검사 본 집금구분에 따라 집금형무소의 장에 대하여 형의 집행 지휘를 한다.				
6	범죄즉결례 시행 수속 제4조에 의해 형무소의 송치하는 여수형자에 대해서는 범죄즉결관서의 장은 본 집금구분에 따라 집금하여 형무소에 이를 송치하다.				

출전 : 「特種受刑者ノ集禁ニ關スル件:官通牒第99號」,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24.12.15.

<부록 9> 「형무소수용구분에 관한 건(刑務所收容區分ニ關スル件)」附表 (1937.03.24.)

집금해야 할 수형자의 종류			집금형무소	이송형무소
장기수형자	무기 또는 형기 10년 이상의 남자 수형자		경성형무소	경성 및 평양복심법원 관내 각 형무소와 지소
			대전형무소	대구복심법원 관내 각 형무소 및 지소
소년수형자	연령 18세 미만 무기 또는	초범으로서 입소당시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3년 수업정도 이	인천소년형무소	전 조선 각 형무소 및 지소

	형기 1년 이상의 자	상의 학력을 가진 자		
		그 외	개성소년형무소	
	연령 18세 이상 20세 미만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의 자		김천소년형무소	同
여자수형자	연령 18세 미만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의 자		서대문형무소	同
	연령 18세 이상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의 자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 단 무기 또는 형기 10년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경성복심법원 관내 각 형무소 및 지소
			평양형무소	평양복심법원 관내 각 형무소 및 지소
			대구형무소	부산형무소, 안동, 마산, 진주 각 형무소 단 무기 또는 형기 10년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대구복심법원 관내 각 형무소 및 지소
	연령 18세 이상 형기 10년 미만 1년 이하의 자		공주형무소	춘천지소
			함흥형무소	청진형무소, 원산지소
		광주형무소	목포, 전주형무소 및 군산지소	
특수수형자	나병환자		소록도지소	전 조선 각 형무소 및 지소
	불구노쇠자		마산지소	同
1	각 형무소장 또는 지소장은 본 구분에 따라 집금할 수형자에 대해서 그때마다 이감의 절차를 행한다. 단 특수 수형자는 이 범위에 맞춘다.			
2	인천 및 개성소년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수형자(서대문은 여 소년 수형자) 만 18세(18세 이상에 특별한 사정으로 소년 처우를 하는 자에게는 만 20세)에 달하는 남자는 김천소년형무소에 여자는 일반수용 구분에 따라 그 집금형무소에 이를 이감한다. 단 3월내에 형기 종료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맞춘다.			
3	김천소년형무소에서는 수형자 만 20세(20세 이상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청년처우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만 23세)에 달하는 일반수용 구분에 따라 각 수용할 수 있는 감옥에 이감할 수 있으나 단 6월내에 형기가 종료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맞춘다.			
4	본 구분에 의해 집금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지휘는 실제로 재소 중인 자에 대해서는 그 형무소장에게 또 새로 입소하는 수형자에 대해서			

는 검사 본 집금구분에 따라 집금 형무소장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출전 : 「刑務所收容區分ニ關スル件: 官通牒第6號」, 『官報』, 朝鮮總督府, 1937.03.24.

<부록 10> 「조선행형교육규정(朝鮮行刑教育規程)」(1937.05.24.)

	조항내용
제1조	수형자의 교육은 따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외 본령에 따른다.
제2조	본령에 따른 교육은 수형자에게 일상생활상 필수적인 보통 지식기능을 교수하여 국민도덕의 이해 및 실천에 이바지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령 20세 미만 형기 6월 이상의 수형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단 성능이 저열한 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연령 30세 미만 형기 1년 이상의 수형자로서 학력 보통학교 제4학년 수업 정도에 못 미치는 자 및 그 밖의 형무소장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	교육은 간이 보통과 및 보통과의 2과로 나누고 소년형무소에는 따로 보습과를 두었다.
제5조	간이보통과의 수업 연한은 2학년으로 4학기로 나눈다. 간이보통과의 학과과정은 간이학교의 정도로서 그 교과서에 따라 수신, 일본어, 산술 및 조선어의 4과목을 교수한다. 단, 일본인에게는 조선어를 부과할 수 없다. 간이보통과를 제1학급 내지 제4학급에 편제한다.
제6조	보통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2학기로 나눈다. 보통과의 학과과정은 보통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의 정도로서 그 교과서에 따라 수신, 일본어, 산술 및 직업의 4과목을 교수한다. 보통과를 제5학급 및 제6학급에 편제한다.
제7조	보습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2학기로 나눈다. 보습과의 학과과정은 고등소학교의 정도로서 그 교과서에 따라 일본어, 산술, 지리, 국사 및 직업의 5과목을 교수한다. 보습과를 제7학급 및 제8학급에 편제한다. 고등소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위해 특별학급을 편제한다.
제8조	형무소장은 전 3조에 규정하는 교과목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추가한다. 단, 그 교수시수는 제11조의 표준 시수(時數)내에서 안배하기로 한다.
제9조	각 학기는 6개월로 하고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30일 및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10조	면업일(免業日), 일요일 기타 형무소장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를 휴지(休止)한다.
제11조	각 과의 교과목 매주 교수 시수 아래와 같다.

	수신	일본어	산술	직업	조선어	지리	국사	계
간이보통과	2	8	4	-	2	-	-	16
보통과	2	6	4	2	-	-	-	14
보습과	-	4	2	2	-	2	2	12

  

제12조	교육을 실시해야 할 자는 그 학력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급에 편입한다. 간이보통과를 수업한 자는 보통과에, 보통과를 수업한 자는 보충수업과에 편입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다.
제13조	교수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동일 학급에 넘겨 2이상의 학조(學組)를 둔다. 취학 인원이 적을 때는 2이상의 학급에 붙여 복식 교수를 행한다.
제14조	각 학기 말에는 고사를 치르고 이에 합격하는 자는 진급 또는 수업을 임한다. 전항의 고사에는 평소의 학업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은 갑을병정으로 나누어 병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5조	학기 중도(中途)라 하여 학업성적 우수자는 임시로 진급 또는 수업을 임하는 것
제16조	행상불량 그 외의 사유에 인하여 다른 취학자의 교육에 방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학을 정지한다.
제17조	취학자에게는 감방 내에서 자습시간을 충분히 지도해야 한다.
제18조	교과서 그 외의 학용품은 급여 또는 대여한다.
제19조	교사 또는 교회사는 교육을 담임해 교육부, 교안부 또는 출석부를 정리해야 한다. 교육부, 교안부 또는 출석부는 별기 제1호 양식 내지 제3호 양식에 따라 조제해야 한다.
제20조	형무소장은 교사 또는 교회사 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임하게 한다.
제21조	학기의 개시 및 종료는 상당한 의식을 가지고 고지해야 한다. 학기의 개시 및 종료에 있을 때는 형무소장은 그 개요를 조선총독에 보고한다. 전항의 보고서는 별기 제4호 양식 및 제5호 양식에 의해 작성한다.
제22조	형무소장은 본령 시행의 위해 필요한 세칙을 정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는다.
제23조	형무소 지소에 있어서 교육 사무는 형무소 지소장에 진행한다.

## <ABSTRACT>

#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Juvenile Pris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ang Hye-Weon

Department of Korea History and Korea 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A juvenile prison was a special type of prison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correctional facility accommodated only boy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oys were called the second group of people or young citizens to save the nation from a crisis and were perceived anew by the people and empire. However, despite this perception, juvenile delinquencies continued to occur with this type of behavior becoming a concern in societ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ecided to build a juvenile prison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A total of three juvenile prisons were set up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Gaeseong Juvenile Prison was the first, followed by Gimcheon and Incheon Juvenile Pris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stablished these facilities in the name of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ies. Each prison had different accommodation criteria according to age, prison term,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each boy. While Gaeseong and Incheon Juvenile Prison accommodated Joseon males who were under 18 and received a life sentence or a prison term of one year or longer, Gimcheon Juvenile Prison accommodated male convicts who were under 20 and received a prison term of one year or longer. Unlike the other two juvenile prisons, Incheon Juvenile Prison accommodated first offenders who went to primary school for three years or so while they were in prison.

Various juvenile delinquencies occurred including larceny, fraud, embezzlement, and injury. Larceny due to poverty accounted for the biggest percentage of juvenile delinquencies. Poverty was prevalent in Joseon during the colonial days, and Joseon people were forced to commit larceny to maintain a living in this environment. There were various causes behind juvenile delinquencies, and they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and social causes to explain them. Individual causes were unique to offenders while social causes derived from the environment of offenders. The ruling Japanese, however, emphasized individual causes most of the time and tried not to be held accountable socially by taking issues with the personal quality of boys. However, as juvenile crimes continued to happen due to social causes, there were

diverse discussions about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ies.

The juvenile prisons ran a point system to grade convicts based on their conduct and work results according to the "Treatment Regulations for Juvenile Convicts" enacted in February, 1923. Boys in different grades received different treatments including rations and work bonuses. Education was provided according to the "Education Regulations for Juvenile Convict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rovided education that convicts could apply to social life after release to purify their emotions and prevent repeated crimes. In 1937, the "Education Regulations for Criminal Administration in Joseon" was enacted and reorganized the educational content of prison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use of Japanese to bring them into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Convicts worked in prison as well as receiving education. Work duties were intended to help convicts adjust well to society after release just like education. Most of the work in prison involved life jobs mainly around government office business.

Once the war broke out, juvenile prisons were used to support war operations instead of their original function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nacted the "Joseon Boys Act" to utilize them as a wartime labor force and prepared legal grounds to use juvenile offenders and repeated juvenile convicts as human resources. Some of the boys put in protective facilities, reform schools, or correctional facilities following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the "Joseon Boys Act" were mobilized in the war under the pretext of employment. Boys who received criminal punishment were recruited into the national service corps and utilized as human resources as their prison terms were adjusted via parole and indeterminate sentence.

Keywords: juvenile prison, juvenile delinquency,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treatment regulation for juvenile convicts, education regulation for juvenile convicts, Joseon Boys Act, national service corps
---